韓國資本主義發展에 관한 硏究*

林　　鍾　　哲**

<目　次>

I. 基本性格
1. 머리말
2. 資本主義의 定義
3. 韓國에서의 諸樣相
4. 맺음말
II. 開發戰略
1. 解放當時까지의 展開
2. 解放以後의 開發戰略
3. 맺음말

I. 基本性格

1. 머 리 말

8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資本主義의 기본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발전단계를 糾明하려 하지 않고 工業化=資本主義라는 도식에 흐르거나[1] 이익의 중심 또는 向方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정짓지 않으면[2]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不等價交換 관계에 치중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성립과 특징을 규정지으려는 경향을[3]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란 좀바르트的인 접근을 하든 슘페터的인 접근을 하든 또 마르크스주의的 입장에 서든 종속이론을 적용하려 하든 간에 主體的, 客體的 및 制度的인 면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三位一體的 條件의 성격 여하에 따라 政治制約的, 合理的, 買辦的, 從屬的(혹은 周邊部) 또는 그밖의 어떤 내용의 것이든 修飾詞가 첨가될 수 있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한국자본주의를 논한 수많은 학자들 가운데 자기 나

* 이 論文은 1984年度 文敎部 學術硏究助成費에 의해 作成되었음.
** 本硏究所 硏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敎授.
(1) 근대경제학자의 논의는 대부분 이러한 폐단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한국자본주의에 買辦的 性格이 농후하다고 보는 소위 民族資本論者들의 주장이 이에 속한다.
(3) 두말할 것도 없이 從屬理論的 입장이 이러한 흐름을 대표한다.

름대로 資本主義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그같이 정의된 자본주의의 불가결한 성립조건을 명시하고 그 하나하나의 조건을 理論的·歷史的으로 밝힘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성립시기 및 현재의 발전단계를 규정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은 試論에서는 좀바르트의 정의가 이론적·역사적으로 資本主義를 분석하는 데 가장 有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학자들 예컨대 베버, 마르크스 등의 주장도 살펴가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성립과 現段階的 특징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資本主義의 定義

자본주의에 관한 가장 명쾌한 定義는 좀바르트의 古典인 ***Der moderne Kapitalismus***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 Unter Kapitalismus verstehen wir ein bestimmtes Wirtschaftssystem das folgendermaßen sich kennzeichnen laßt; es ist eine verkehrswirtschaftliche Organisation, bei der regelmaßig zwei verschiedene Bevolkerungsgruppen, die Inhaber der Produktionsmittel, die gleichzeitig die Leitung haben, Wirtschaftssubjekte sind und besitzlose Nurarbeiter (als Wirtschaftsobjekte) durch den Markt verbunden, zusammenwirken, und die von dem Erwerbsprinzip und dem okonomischen Rationalismus beherrscht wird [Sombart(1919, p. 319)].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때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本質的 要素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

둘째, 자본가의 排他的 支配

셋째, 市場

넷째, 營利主義

다섯째, 經濟的 合理主義

이하에서 이들 다섯 가지 조건을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1) 資本家와 勞動者

자본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자본을 독점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자본가는 또 다른 (本源的) 生産手段인 토지나 노동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地代 및 賃金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하여 필요한 만큼의 土地用役과 노동력을 購入·支配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4] 즉 자본가에 의한 토지의 私有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조건이 아니며 所有와 勞動은

(4) 이 점에 관하여 劉京春(1990, p. 24)교수는 "토지에 있어서 人權으로서의 財産權의 보장이라 함은 원래 토지이용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자본주의제도의 성립사와 관련시켜 볼 때——인용자) 토지소유권을 토지이용권에 종속시키는 과정이 토지법 제도의 역사적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의 賣買가 전제되는 한 반드시 産業勞動者가 主일 필요는 없고 農業勞動者가 주가 되어도 형식상 관계는 없지만[5] 後述할 자본주의하의 자본의 지배적 존재형태를 생각할 때 산업노동자가 主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資本家의 排他的 支配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경제적 결정권은 자본가만이 가져야 한다. 경제적 결정권의 獨占은 資本의 독점이라는 물질적 조건에 근거한다. 資本主義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적 생산수단은 자본이며 토지나 自然力(Naturkraft) 또는 人間資本이 아니다.

노동자는 無所有라는 下部構造 조건에 의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經濟客體로 기능하며 자본가의 결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자본가의 배타적 결정권이 제약받거나 노동자가 經濟的 決定權에 참여할 때 그것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사회는 아닌 것이다.[6]

3) 市 場

市場은 경제사나 인류학에서 말하는 交換場所(market place)가 아니라 다수의 수요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흥정함으로써 시장을 一掃하는 단일의 均衡價格을 形成시키는 供給·需要 價格形成機制(supply-demand price making mechanism)란 의미의 것이 前提되어야 한다.

동질적인 상품이 교환되는 무수한 生産物市場과 要素市場이 있어야 하며(시장의 分化)[7] 가격은 權力當局 또는 獨寡占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고정가격(fixed price)이 아니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흥정하는 가운데 특정한 개인과는 관계없이(impersonal) 형성된 흥정價格(bargained price)이어야 하며 가격은 완전한 彈力性과 伸縮性을 가짐으로써 需給調節이 가격을 매개로 하여 市場 내부에서 완결되어야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로 立場을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이같은 自動調節機能을 갖는 여러 종류의 市場이 서로 연결지워져 하나의 완전한 體系를 이루는, a system of self-regulating markets가 자본주의를 성립가능케 하는 하나의 制度, 統合패턴으로서의 시장이다.

(5) Weber(1924, p.238)는 "자본주의는 한 인간집단의 營利經濟的 수요 충족이 기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수요는 무슨 종류의 것이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6) Slichter(1948)교수가 전쟁 직후의 미국사회를 노동주의사회(laboristic economy)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런 脈絡에서였다. 그 후 그는 'interest group economy'란 표현도 썼다가 최종적으로는 mixed economy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福祉社會란 용어와 더불어 자본주의사회란 표현까지도 미국경제에 쓰기를 거부하였다〔Slichter(1961, pp.174-6)〕.

(7) 시장참가자, 시장(=전문시장), 시장관리자의 성격 변화는 유럽의 경우 12~13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 및 土地의 상품화 즉 要素市場의 성립은 Hicks(1969, Chs. 7-8)가 말하는 농업의 商業化 進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4) 營利主義

자본주의를 擔持하는 主體인 자본가는 이윤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경제행위를 한다. 최근의 微視理論에서 상정하듯 極大化行動의 목표가 어떠한 것이어도 관계가 없다(the ends are open)는 것은 좀바르트流의 엄격히 정의된 자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 다만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이윤은 短期利潤일 수도 있고 長期利潤이어도 관계는 없지만 기업목표에 관한 또 다른 假定인 期待水準充足 또는 賣上高極大化 등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5) 經濟的 合理性

자본주의가 전제하는 經濟的 合理性은 一貫性(consistency)이 아니다. 그것은 베버가 강조하듯 計算(calculation)이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베버(1924, p. 238ff)는 "합리적인 資本主義的 經營은 자본계산에 의한 경영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近代簿記의 수단에 의하여 그 收益性을 계산할 수 있고 貸借對照表의 작성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營利經營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投機나 冒險과 峻別하고 있다.

6) 그 밖의 要件

近代資本主義 또는 合理的 자본주의는 흔히 產業資本主義라고도 불리우며〔예컨대 Weber (1924) 등〕 따라서 지배적 경제활동형태 또는 자본주의의 物質的 基礎 내지 생산력기반으로서 工業을 전제한다. 생산활동의 내용이 수렵·채취 또는 耨耕農業(horticulture)에서 集約農業(agriculture)을 거쳐 공업(industry)으로 변화하는 데 정확히 대응하여 사회·경제체제가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그 物質的 基礎로서 공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본주의는 반드시 공업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命題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8] 하나의 世界體制로서의 자본주의는 공업에 크게 기초하고 있지만 개개의 자본주의 국가를 考察할 때 工業이라는 조건 내지 특징은 그렇게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같이 생각할 때 베버가 資本主義의 特徵 중 하나로 지적한 대량의 固定資本의 존재 역시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비하면 財產을 보호하고 계약준수를 강제하며 度量衡制度를 제정하고 화폐를 마련하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合理的 國家의 존재가 하나의 制度的 外被로서는 絕對的 條件이 될 수 있다. 합리적 국가라고 할 때 위에서 말한 본질적 기능보다는 국가의 성격 자체가 더 중요하다. 국가가 合理的이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의 힘이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값싼 정부론, 야경국가관), 둘째 그 작은 힘도 恣意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고 개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행사도 社會가 정한 公正한 行爲準則에 의해 엄격히 제약되

(8) 註 (6) 참조.

어야 한다.

國家權力이 언제,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발동되는가를 모든 국민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소위 豫測可能性의 原理). 行政分野에서의 法治主義, 司法分野에서의 罪刑法定主義, 經濟分野에서의 租稅法定主義 등은 모두 이를 위한 장치이다. 국가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合理性을 결여할 때 자본주의 역시 합리성이 훼손되어 政治制約的 資本主義(politisch-bedingte Kapitalismus)로 변질, 타락할 수 있다.

슘페터는 기업가(entrepreneur)의 新結合(innovation)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장치로서 銀行(=信用創造機關)의 존재를 絕對的인 條件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를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슘페터 모델에서는 기업가, 新結合, 신용창조기관은 솥의 세 발과 같은 三位一體的 條件이지만 좀바르트流의 정의에서는 이는 便宜를 위한 것이지 국가, 화폐의 존재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 韓國에서의 諸樣相

1) 階 級

한국에서 資本主義企業은 1883년의 大同商會(평양), 長通會社(서울) 등에서 비롯되며 甲午改革 이전에 이미 40여개가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趙璣濬(1973, pp. 40-1)〕.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이 때부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分化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1894년의 甲午改革 이전의 한국사회는 契約社會가 아니라 身分社會였으므로 主體的, 制度的으로 勞使階級이나 勞使關係는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고, 둘째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이들 근대기업도 그 실질적인 성격은 同業者組合, 協會 또는 官設會社였으므로〔趙璣濬(1973, p. 42)〕 그 소유자를 자본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1888년에 咸鏡道 草山(현재는 江原道)에서 발생한 鑛店軍 폭동도 저자들〔金潤煥・金洛中(1975, p. 11)〕이 적절히 해석했듯이 民亂으로서 봉건적 苛斂誅求에 대한 저항이지 勞使紛糾는 아니었으며, 1898년의 강원도 掌峴, 1901년의 平安道 雲山에서 일어났던 광산노동자의 투쟁은 그 성격상 민족주의적 정치투쟁이었다.

1898년에 와서야 咸鏡道 城津에서 李奎順이 한국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木浦의 부두노동자들이 劣惡한 勞動條件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동맹파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한국자본주의 최초의 勞使鬪爭이라고 할 수 있다.[9] 1911년에 회사수는 152개(그 중

(9) 金潤煥・金洛中(1975, p. 12)이 인용한 『木浦誌』에 의하면 "일본인 등이 매일 사역하는 韓人夫의 賃錢에 대해서도 그 지불방법 및 청구방법이 구구하여 매우 不統一的이며 동시에 불편을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아 그 표준을 정하려고 이것을 협정하려고 하였는데 韓人夫는 불평을 외치며 취업을 거부하고 同盟罷業을 실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賃金制度의 변경을 통한 賃金引下方針

85개가 주식회사) 공장수는 252개였고, 공장노동자는 12,180명이던 것이〔全國經濟調査機構聯合會朝鮮支部(1939, 統計表 77)〕 1945년 1월에는 591,494명으로 크게 늘었고 기타 부문의 賃金勞動者數는 2,122,374명에 이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金潤煥·金洛中(1975, p. 62)〕. 1945년의 家口數가 대략 470만으로 추정되므로 212만 명의 임금노동자는 전체 家口의 45.1%에 달한다.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자본주의의 階級的 特徵 또는 條件은 이미 日帝强占 때에도 충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資本家支配

자본가적 기업이 성립된 이후 지금까지 자본가의 지휘권 또는 지배력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비단 근대적 임금노동자에게 雇傭과 生計를 보장해 주는 源泉的 手段인 자본을 독점하고 있다는 순수히 經濟的인 關係에만 기초한 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운동을 體制顚覆運動으로 동일시한 정치적·행정적인 독력의 加勢,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조건의 지속과 연관된 供給超過 및 需要獨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 일본식민지지배의 잔재인 家父長的 支配意識도 자본가의 지휘권을 강화시키는 非合理的 요인으로 가세하였다. 1987년 이후의 노동쟁의에서 無勞動·無賃金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勞動市場秩序가 무너지고 人事權 등 아직까지는 자본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침해가 늘고 있지만 主體的, 制度的 諸要因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經營參加, 共同決定 또는 自主管理가 전혀 불가능한 한국경제의 實在에 비추어 노동자에 의한 이같은 자본가 지휘권의 침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市 場

供給·需要 價格形成機制가 완벽하게 작용하느냐의 與否와는 관계없이 단순한 交換場所로서의 市場體系(a system of markets)가 성립된 것은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1970년대 이후였다. 유럽자본주의체제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탄생하여 완성되어 온 金融市場이 한국의 경우 아직도 株式市場(stock exchange)과 金融市場(money market)으로 또 금융시장이 抵當市場(mortgage market), 長期債券市場(long-term bond market) 그리고 短期金融市場(short-term money market) 등으로 분화된지 얼마 안되며〔朴在潤(1979, 제 3 장 제 2 절 및 특히 제 3 절)〕 商品市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現物만 주로 다루지 先物市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토지시장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경제이론에서 想定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경제이론에서는 자본가와 地主階級 사이에 土地用役이 地代(rent)의 媒介變數的 機能을 매개

에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制度改善을 빙자하여 한국인을 억압·수탈한 예는 「會社令」의 경우에도 현저히 드러나는 일이었다.

로 하여 교환되는 것임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土地用役이 아닌 土地 그 자체가 地代가 아니라 地價(price of land)를 매개변수로 하여 거래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封建的 所有를 부르주아的 所有가 대신하게 되고 土地가 商品化된 다음에는 土地서비스가 거래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土地 그 자체가 거래되느냐 하는 차이는, 勞動서비스만 시간 단위로 賣買되느냐 또는 勞動者 그 자체가 매매되느냐 하는 또 다른 本源的 生產要素市場인 勞動市場에서의 교환형태와는 형식적으로나 本質的으로나 동일한 것이지만 機能面에서는 하등 지장이 없는 것이다.

生產物市場(product market)의 경우는 그것이 生產財市場(producer's goods market)이든 소비재시장이든 시장의 分化는 경제이론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傳統的 市場 즉 경제사가나 인류학자가 말하는 교환장소로서의 시장, 未分化된 시장은 韓國戰爭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本源的 生產要素인 土地와 勞動의 경우 시장은 1920년대 이후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生產物市場의 경우는 生產財이든 消費財이든 1950年代까지는 外樣을 갖추었고 資本市場의 경우는 株式市場과 金融市場이 1970年代에 와서는 具色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交換場所(market place)로서의 시장은 1970年代에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市場經濟의 운행을 보장하는 制度裝置로서의 시장 즉 供給·需要 價格形成機制로서의 시장은 어떠한가. 同質的인 각각의 재화에 대하여 단일의 균형가격을 형성시키는, 즉 一物一價의 原則을 관철시키는, 諸市場이 완료되기 이전인 1920年代까지는 價格은 고정(fix)되지 않고 자유로웠다. 그러나 市場의 不備에 추가하여 노동 및 토지 등 本源的 生產要素의 거래와 경제적 비중이 작았던 공산품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一次產品市場에 있어 供給은 價格機制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封建的 强制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1950년에 農地改革이 있기까지도 一次產品供給은 價格에 의하여 좌우되기보다는 身分社會的 諸要因 즉 慣習的 또는 權威的 强制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이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제도적으로나 實物的으로나 農地改革을 계기로 財產的 活動을 할 수 있는 物質的 基盤이 마련된 1950년 이후이었으므로 日帝强占下의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적 기업활동이 자유로워진 1920~36년간에 있어서도 供給·需要 價格形成機制라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시장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1937년의 「重要產業統制法」과 그에 뒤이은 配給制 실시로 1937년 이후의 한국경제에서는 단순한 交換場所로서의 市場도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1961년까지의 기간은 自由企業原理를 신봉하던 李承晩 政權의 경제철학에 힘

입어 全面的 規制干涉이 필요했던 당시의 經濟實情에도 불구하고 價格機制에 대한 간섭은 최소에 그칠 수 있었다. 李承晩 정권이 시종일관 간섭한 가격은 換率 하나뿐이었는데 그 換率의 固定(유지)도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政府保有弗公賣, 物價安定政策 등 간접적인 市場利用的 方法에 의지하였었다. 1945~61년간은 價格機制를 통한 調整이 지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擇一的 調整機制(co-ordinating mechanism)인 命令은 최대한으로 배척되고 市場에 의한 조정에 의존코자 하였던 시기였다.(10)

그러나 소위 官主導型 計劃的 開發이 시작된 1962년 이후의 한국경제에서는 實物의 성장(=경제발전)과 더불어 交換(場所)體系[market (place) system]는 정비되어 있지만 市場機能(=價格機制)은 완전히 동결되었었다. 공급은 일차적으로 개발계획의 큰 테두리에 묶여 價格機制에 의한 조정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1년 또는 반 년 단위로 計劃外的 直接統制의 대상이 되었고 外資뿐만 아니라 內資의 흐름 역시 언제 어디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融資하라는 경직적 명령에 의하여 그 흐름이 형성되었다. 最終消費財 및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가격통제 주로 最高價格指定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같은 명령을 위배할 때는 가혹한 制裁가 가하여졌다. 勞使雙方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형성되던 賃金率은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介入·調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의 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에 대한 統制를 통하여 그 伸縮性이 歪曲·毁損되었다.

이같은 命令에 의한 市場의 代替는 1980년 이후에는 표면적으로 없어진 것같이 보이지만 1979년 이전에 있어서의 價格機制의 기능마비가 직접적, 명시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에 있어서의 價格機制의 불완전한 기능은 間接的, 默示的인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명령을 통한 强權的 規制 즉 市場機制代替는 國際商事 解體 또는 不實企業整理 등 수많은 사례에 의하여 實證되고 있다.

자본주의를 供給·需要 價格形成機制라고 생각할 때 1990년의 현재까지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營利主義

자본주의는 시장을 매개로 이윤을 실현시키는 流通經濟組織이고 시장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윤실현을 위한 자본의 순환이 반드시 M—C—M′ [=M—C(MP, LP)…P…C′…M′]란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단, M은 화폐, C는 상품, MP는 생산수단, LP는 노동력, P는 생산과정, C′는 C보다 높은 가치의 새로운 상품, M′는 M+m, m은 잉여가치이

(10) 이러한 정책태도는 Adelman(1969, p.16)이 말한 李承晩 대통령의 강한 反計劃的 偏見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11] M—C̄—M′[12] 또는 M—M′라는 자본의 순환을 통하여서도 利潤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近代資本主義는 곧 산업자본주의이고 산업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의 존재를 絕對的인 條件으로 前提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하여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 1차산품이든 2차산품이든 막론하고 産業資本主義社會에서의 營利主義는 M—C—M′란 형대로 관철되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하겠다.

M—C—M′란 형태의 영리주의는 형식적으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적 형태의 기업이 탄생하였던 1880년대에 나타났었고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1920년대 이후 즉 「會社令」이 철폐된 이후부터는 一般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근대적 회사조직의 비중이 1921년 현재 전체의 15.5%에 불과하였고 資本金面에서의 그것은 4.3%였던 것이 1929년에는 각기 19.3%와 1.3%로 바뀌었고〔朝鮮總督府(各年度)〕 1940년 현재 공업부문에서의 公稱資本金 중 한국인소유가 불과 6%였다는〔朝鮮銀行調査部(1948, p. Ⅰ-100)〕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45년 이전에 M—C—M′란 형태의 영리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有形財生産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에서는 資本家的 生産樣式은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

1945~50년의 기간에 있어서는 歸屬財産을 중심으로 M—C—M′적 이윤추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원료·기술·경영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혼란으로 생산이 위축되어 이러한 타입의 營利主義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산업시설이 거의 모두 파괴되어 M—C—M′적 이윤추구를 위한 物質的 기반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54년까지는 주로 援助資金을 財源으로 한 M—C̄—M′적인 영리주의가 지배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원조가 본격화하며 소비재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시작된 1954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즉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구성비가 1953~61년을 통하여 평균 44.8%로 제조업의 13.6%보다 월등히 컸다는 사실, 미국원조가 같은 기간 중 GNP의 평균 14.1%였다는 사실, 그리고 주요한 資本形成源이었던 미국援助의 처분내역이 시설재 27.6%, 원자재 및 소비재 72.4%였다는 사실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13]

工業生産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14.3%에서 31.3%로 커진 1962~89년간에 있어서도 M—C—M′ 형의 영리주의가 반드시 支配的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3粉暴利, 부동산투기, 財테크 등 상품시장, 토지시장, 자본시장에서 不比例的으로

(11) 부호 및 설명은 金秀行(1988, p.62)에 의함.
(12) M—C̄—M′로는 (MP, LP)…P…C′라는 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의 순환, 즉 상업자본적 순환을 나타내기로 한다.
(13)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 중 미국원조의 5.5%에 불과하였던 UNKRA원조의 사용비율은 시설재 70.5%, 소비재 29.5%였다.

른 성업이윤이 추구되고 또 실현되었으며, 對外的으로는 현저한 國內外金利差를 노린 외자도입, 外貨의 特惠配定, 換評價差益 등 外換市場 중심으로 엄청난 금융이윤이 실현되었다. 결국 M—C—M′란 근대자본주의 또는 합리적 자본주의 혹은 또 산업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자본주의경제에서의 지배적인 영리추구형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한국의 산업자본가가 실현시키고자 해 왔던 것은 1910년 이후 일관하여 短期利潤極大化였다. 이러한 특징은 創業一世企業의 경우 더욱 현저하며, 1960년대의 3粉暴利騷動이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탄압, 농촌에 대한 可謂 植民地型 收奪은[14] 이러한 자본가행동의 표현인 것이다. 최근 수 년간에 가장 격렬한 勞使紛爭을 경험하고 있는 기업은 그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創業主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一世經營企業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二世經營企業과는 달리 一世經營企業의 목표가 短期利潤極大化이고 그것도 M—C—M′라는 자본가적 생산의 合理性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M—M′ 또는 M—$\bar{C}$—M′ 등 가능한 모든 이윤기회를 탐욕스럽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5) 經濟的 合理主義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은 동양사회에서 自生한 것이 아니다. 論者 중 일부는 이를 儒敎에서 찾으려 하고 있지만 동양사상의 源流를 이루는 儒敎, 佛敎, 仙道는 말할 것도 없고 法家思想까지도 모두 서양의 Hellenism 또는 Hebrewism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적 합리주의 정신과는 일차적으로 무관하다. Samuelson(1973, p. 770)의 재치있는 표현을 빌릴 때, 자본가적 합리주의는

$$\text{행복} = \frac{\text{물질적 소비}}{\text{욕망}}$$

이라는 등식에서 분모인 욕망은 자연스럽게 변화·증가하도록 내버려 두고 分母가 커지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分子인 物質的 消費를 증대시켜 행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태도 또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다만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不患其寡而患不均)는 儒敎的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고 富 또는 蓄積 그 자체까지도 죄악시한 使徒 마태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Hebrewism적 가치관은 모두 분자인 물질적 소비를 오히려 작게 하면서도 분모인 욕망을 더 크게 축소시켜 행복해지려는 行動樣式을 가지

(14) 여기서 植民地型 收奪이라 함은 1, 2次 產品間의 前者에 불리한 不等價交換이라는 客體的 條件만을 고려하고 民族에 의한 他民族 生產物의 조직적 寄食이라는 主體的 條件은 배제한 것이다. 그러기에 植民地型이라고 특별히 型字를 붙인 것이다.

고 있었다[Robbins(1968, Lecture 7, 특히 pp. 154-60)]. Diogenes가 유일한 動產이었던 표주박까지도 버렸다는 Hellenism 사회의 逸話는 적어도 16세기 이전에 있어서는 세계의 모든 사회에 공통되는 행동양식, 가치관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다만 西유럽의 경우 文藝復興을 계기로 Hellenism 및 Hebrewism적 禁欲主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宗教改革, 그 중에서도 Calvin의 그것에 의하여 絕對君主 중심의 팽창주의, 蓄積을 위한 축적주의가 합리화되면서부터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이를 擔持해 나갈 수 있는 특수한 類型의 인간, 소위 *homo oeconomicus*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본가적 합리주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질적 소비의 극대화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homo oeconomicus*는 욕망을 극소화함으로써 행복해지려는 儒教를 비롯한 東洋的 淸貧主義精神과는 전혀 異世界的인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유교정신이 近代 日本의 자본주의화 및 경제적 성공의 기초라는 주장이 있지만[15] 일본의 儒學이나 유교문화의 생활화 수준은 한국에 크게 못쳤음은 일본에서조차도 異論이 없다. 오히려 司馬遼太郎 등이 주장하듯[16] 德川幕府 3백년을 통하여 江戶(현재의 東京)와 특히 大阪에서 自生한 商人文化, 商人的 價値觀이 明治維新 이후 일본정부가 주도한 重商主義 膨脹主義와 별다른 마찰없이 자연스럽게 接木되어 오늘날 일본의 economic animalism을 탄생시킨 것이다. 일본자본주의의 ethos는 결코 유교적인 것이 아니다. 도시 일본에는 전국민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儒教文化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있었던 것은 支配層이나 被支配層을 막론하고 기이한 調和를 이룬 神道主義와 佛教文化의 合一이었던 것이다.

유교문화의 전통이 中國보다도 오히려 더 강했던 한국에서는 가치관이나 생활관습이 모두 축적이나 성장보다는 안정과 평등에 기초를 둔 것이었고 그것은 高麗, 朝鮮 등 몇 차례의 새 王朝創建 때 극적으로 표출되곤 하였었다. 複式簿式를 사용하여 合理的 計算을 하기

(15) 森嶋通夫의 일본자본주의관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16) 司馬遼太郎는 德川幕府時代의 商人文化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江戶時代의 상품경제의 盛行이 주로 商人이나 도시 부근의 농민들 사이에 合理主義思想을 형성케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들 社會的 實務層(農·工·商)으로부터 思想을 흡수한 사람으로 우선 新井白石(1657~1725)나 荻生徂徠(1666~1728)가 있다. 이어 이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독창적이었던 富永仲基(1715~1746), 海保靑陵(1755~1817), 山片蟠桃(1748~1821) 등 人文科學的 思想家가 나왔다." 즉 司馬에 의할 때 17~18세기 日本을 대표하는 儒學者들의 合理主義, 實踐的 性格은 商人들로부터 영향받고 연유한 것이지 商人들의 合理主義思想이 儒學者 또는 儒教에 연유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어 그는 江戶時代의 日本儒學水準에 대하여 "各藩은 江戶中期 頃부터 경쟁적으로 藩校를 세우고 그 忠實을 기했지만 將軍家인 德川氏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直屬(旗本)學校는 瓦解 때까지 끝내 못갖고 말았다…… 學問을 장려한 佐賀藩에서도…… 학문하는 姿勢는 엉터리였으니 暗誦을 중시하고 獨創을 부정했다.(早稻田大學을 세운 舊佐賀藩士 大隈重信도—인용자) 佐賀藩의 學制는 수많은 俊秀를 凡庸으로 만든 결과가 없지 않다(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인용자)." 『文藝春秋』, 1987년 4월호를 참조.

는 오래 되었지만〔李正浩(1980, p. 54)〕, 물질적 소비를 극대화함으로써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새로운 生活樣式은 開港 이후 外國資本家에 의하여 移植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나마 근 1세기가 지난 다음인 1970년대 전후에 朴正熙 대통령에 의하여 강제된 明治維新的 富國强兵精神, 朴正熙版 重商主義를 통하여 하나의 생활관습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00년 전후 및 1960년대의 두 시기에 걸쳐 한국인의 價値體系에 커다란 충격을 준 資本家的 합리주의정신은 본래 歐美社會에서 비교적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經濟體制인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또 유지해왔던 合理主義精神과는 그 내용이 꼭 같은 것이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첫째, 1880년대에 자본주의를 한국에 소개한 歐美資本家들은 우선 數的으로 막 자본주의적 變容을 시도한 日本, 中國에 비하여 매우 적었고,(17) 또 철도, 광산 등 利權探求者들이었지 한국민과 일상적 접촉이 빈번한 商業에 종사하는 자가 적었고, 帝政러시아의 경우는 政治的 方略에 급한 나머지 經濟的 必然性을 수반하지 않았다〔朝鮮貿易協會(1943, p. 43)〕. 따라서 大韓帝國에 2만 파운드란 거액의 財政借款을 제공한 Meyer商會(世昌洋行)를 비롯하여 Bennet商會(廣昌洋行), Townsend商會 등 歐美系統의 大資本家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의 移植, 培養에 크게 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中國으로부터의 資本家的 합리주의정신의 移植 또한 어려웠다. 中國은 阿片戰爭으로 門戶開放을 강제당하기 이전에도 歐美 자본주의국가와의 오랜 交易의 경험이 있어 일본에 비해서는 보다 더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을 體化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開港 이후 한국에 진출한 中國企業은 수적으로 일본보다 적었고 그나마 「주로 輸入에 종사하여 그 收支差를 金으로 청산하여 본국에 보내는 습관을 가지고」〔朝鮮貿易協會(1943, p. 43)〕 제한적 활동을 하였고, 그나마 淸日戰爭의 패배와 露日戰爭 후 한국에서 日本의 군사적·정치적 패권확립과 더불어 급속히 그 세력이 쇠퇴되어 비록 「大國人」으로 한국인의 모방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못했고 또 오래가지도 못하였다.

자연히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양식은 入植日人에 의하여 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入植日人은 당초부터 경제적 합리주의정신에 투철한 자본주의적 기업가가 아니라 무자비한 收奪者로 來侵한 것이었다.(18) 이들은 첫째로 대부분이 本國에는 생활기반이 없는 marginal

(17) 1896년 현재 258개였던 在韓外國商館 중 日本이 210개, 中國이 42개, 독일, 미국이 각기 2개, 영국, 프랑스가 각기 1개로 기록되어 있다〔朝鮮貿易協會(1943, p. 43)〕.

(18) 이와 관련하여 朝鮮貿易協會(1943, p. 42)는 "한국인, 한국땅에 대한 상업은 선의의 來住者에게는 他日의 비약을 기하기 위한 敎導的 段階이고 惡意의 모험가에게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譎詐奸謀를 회책하는 건곤일척의 기회였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man 들로서[19] 일확천금하여 錦衣還鄕을 되도록 빨리 하려는 短期正常的 行動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그나마 일본의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적 洗禮를 받은지 日淺하여 歐美資本主義的 合理性을 완전히 익히기 이전이었고, 셋째, 동시에 자본주의적 팽창에 급급한 일본정부가 경제에 강력히 개입하여 소위 政商을 量産함으로써〔柴垣和夫(1968, pp. 9-30)〕歐美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성립과정에 있어 경제외적 요소, 특히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여 市場을 醇化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외적 요소를 强度높게 도입하여 독특한 유형의, 즉 官主導型 經濟 또는 일종의 특이한 官僚資本主義를 彫塑함으로써 政治指向性을 크게 하였었다.

그 결과 開港 직후는 말할 것도 없고 日本資本主義가 歐美的 合理主義精神를 제대로 배우게 된 1920년대 이후에 있어서도 한국에 入植한 일본자본가는 일확천금 후 금의환향하려는 收奪者로 시종하였고 「後白浪」(아토시라나미)[20]라는 日本語辭典(廣辭林)에도 없는 新語를 만들어낼 만큼 「합리적 정신, 생활태도의 합리화, 합리적 경제윤리」라는 베버的 前提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다. 1930년대에는 소위 大陸兵站基地로서 수탈대상이 된 한국에 新興軍需財閥 중심의 産軍複合的 進出이 적극화하였으므로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은 더욱 쇠퇴하고 政治指向性만이 高調되었다. 外勢와의 抗爭 35년(1876～1910년) 및 日帝强占 35년(1910～45년) 간의 學習(learning by someone else's doing) 過程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배운 한국경제는 微視的으로 企業人 次元에서는 收奪者를 합리적 자본가의 原型으로 그릇 인식하여 이들을 모방하였고 巨視的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규제간섭이 자본주의적 經濟運行에 불가결하다는 明治維新版 重商主義를 자본주의로 오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 및 농민에 대한 일관된 수탈과 差別, 독과점적 고가격 조작, 문어발식 경영, 근대적 산업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난 온갖 營利機會의 추구 등 創業一世 당시 및 지금에 있어서도 創業一世企業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의 결여는, 微視的 學習過程에서의 잘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國有企業·財産의 特惠拂下, 劣惡品의 高價納品(정부구매), 재정금융상의 특혜, 賂物授受 등은 巨視的 學習過程에서의 잘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은 주로 미국유학에서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19) 日本人이 일찍부터 入植한 釜山에는 80여 명의 日人 중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商人이었는데 日本 本國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자들은 大倉喜八郎 등 몇 명에 불과하였다. 또 1887년 현재 서울의 진고개 日商 중 무역상은 수 명에 불과하였고 전당포, 과자점, 잡화상, 西洋綿織布商이 각각 10명 정도였고 藥種商이 5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 零細性과 前近代性은 이같은 業種別分布로도 짐작할 수 있다〔趙璣濬 (1973, p. 32)〕.

(20) 일확천금후 한국을 떠나 玄海灘에 흰 물결(白浪) 즉 흰 航跡만 뒤에 남기고 떠난다는 뜻이다.

제대로 공부하고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을 日常的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자본가들의 行動을 보고 들으며 또 직접 접하는 과정에서 이를 터득한 二世經營者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오랜 官僚專制主義的 傳統과 일본식의 官主導主義까지 추가된 經濟風土 때문에 二世經營者가 학습하고 체득한 합리주의정신이 그대로 실천되는 정도가 아직도 미약하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資本家的 合理主義精神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定着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 음 말

前近代工業(ancient industry)이 아닌 近代工業(modern industry)[21]을 중심으로 생산요소의 結合行爲를 한다는 機能的 측면에서의 자본가계급은 1910년대부터, 아무리 늦어도 토지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제도가 도입되고 「會社令」마저 철폐된 1920년부터는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당한 정도의 階級意識을 갖고 數와 組織이라는 면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自由賃金勞動者階級 역시 1920년대에는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적 시장으로의 변화는 1930년대 초까지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지만 「重要產業統制法」(1937년) 시행 이후에는 調整機制는 다시 命令과 배급으로 후퇴하였다. 1945~61년까지도 명령을 축소하고 市場機能을 조장하고 自由企業體制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상당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政府主導型 計劃的 開發이 시작된 1962년 이후 다시 명령경제로의 후퇴가 일어나 시장은 명령에 종속되었다. 한편 교환의 장소란 의미로의 시장제도(a system of markets)는 1970년대에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長期利潤 極大化, 期待水準 充足 또는 賣上高 極大化 등 1870년대 이후의 歐美資本主義社會에서 볼 수 있는 목표를 전제한 적이 없었다. 오직 중상주의적 또는 마르크스時代的인 短期利潤 極大化行動을 하였고 자본가계급과 非資本家階級間에는 零和게임(zero-sum game)的 相克關係만을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고집하고 있었다. 이윤추구내용도 산업자본주의적인 M—C—M′에 치중하기보다는 M—$\bar{C}$—M′ 또는 M—M′에 오히려 열중하였다.

자본주의 학습과정에서 한국의 자본가는 합리적 자본가의 原型으로 일본의 수탈자를 설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것이 한국에서 資本家的 合理主義精神의 定着을 저해한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한국자본주의의 政治指向性은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二世經營體制가 지배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는 자본가적 합리주의에 의하

(21) ancient industry와 modern industry와의 差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Hicks (1969, Ch. IX)를 볼 것.

여 경제가 운영될 企業側 條件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機構 중 가장 먼저 도입되고 확립된 것은 가장 자본주의적 기업조직형태라 할 수 있는 株式會社였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1880년대에, 실질적으로는 1920대에 완성되었다.

光武貨幣改革으로 인한 商業資本의 파괴,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土地資本收奪, 「會社令」으로 인한 近代的 產業資本으로의 전환 방해 등으로 인하여 산업자본주의를 위한 물질적 기반인 資本의 축적은 1945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韓國戰爭으로 인하여 歸屬工業資產마저 파괴되고 農地改革의 실패로 토지자본마저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된 1950년 이후 한국에서의 자본축적은 1950년대에는 무상원조자금에 의하여, 1960~70년대에는 借款에 근거하여 他律的으로(assisted accumlation) 이루어졌다.

國家의 자본주의적 합리성 결여는 한국에서 합리적 자본가행동 및 합리적 자본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豫測可能性의 原理가 확립되지 못함으로 해서 자본가의 合理的 計算은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이는 租稅行政面에서 尤甚하다. 한편 政治·行政權力의 市場(經濟)介入의 歪曲效果도 매우 크다.

자본주의를 위한 制度的 外樣은 비교적 일찍 완성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와의 접촉이 이미 1세기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調整機制와 관련시켜 볼 때 1931~45년 및 1962~현재까지의 한국자본주의는 資本主義 市場(經濟)이라고는 하기 어렵고 資本主義 命令經濟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그것도 1936~45년간의 Nazis적 경제보다는 자본가적 합리주의정신의 未備와 관련시켜 오히려 重商主義的 資本主義의 특징이 농후하다.

현단계의 한국자본주의를 그 客體的, 制度的 諸條件에도 불구하고 이를 3세기 전의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에 比定하는 이유는 主體的 諸條件의 특이성 때문이다. 첫째, 기업의 경우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형식적으로는 申告主義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株式會社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는 일종의 特許會社(chartered company)이다. 둘째로 자본가의 경우 적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經濟的 合理主義精神은 중상주의시대의 프랑스 資本家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低農產物價格의 강세와 賃金抑壓 및 勞動者彈壓은 「낮은 實質賃金은 國益에 합치된다」(low real wage is to the national interest)는 중상주의 임금학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또 創業一世企業에서 볼 수 있는 零和게임적 狀況設定도 「甲의 毒은 乙에게는 藥」[손해보는 사람 없이는 이익을 올릴 도리가 없다(No one ever loses without another

gaining)]"[22] 이라는 중상주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의 성격 역시 중상주의국가와 지극히 흡사하다. 우선 政治權力의 絕對化란 점에서 1962~90년의 한국은 중상주의시대의 프랑스와 다를 바 없다. 또 경제 각 부문에 대한 干涉主義 역시 동일하다. 더욱이 국가의 전면적 간섭주의는 국민후생(general or public welfare)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권력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政治 및 行政集團[Earl Latham이 말하는 소위 公共集團(public group)][Friedman(1971, p. 8)]과 그 下手人 노릇을 하는 巨大企業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한국의 간섭주의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福祉國家的 干涉主義가 아니라 중상주의적 간섭주의이다. 開放時代로 들어와서조차도 여전히 강조되는 全面的 工業化 및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이라는 經濟政策基調도 콜베르 時代의 프랑스 資本主義國家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여기에 貿易黑字가 국민경제에 유리한(favorable) 것이라는 近隣窮乏化政策的 國際經濟觀 역시 交易條件 또는 貿易乘數效果를 중시하는 고전파적 또는 케인즈的 政策基調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중상주의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主體的 諸條件으로 보아 필자는 특히 1962~80년의 한국경제를 중상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성격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적, 객체적인 諸條件과 그 運動法則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지금의 한국자본주의는 이를 國家獨占資本主義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政治權力과 經濟權力간의 利害關係 및 세력관계이다. 한국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銀行資本이 產業資本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金融資本으로 발전하고 다음으로 다시 자신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권력을 종속시킴으로써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된다는, 고전적 의미의 過程 및 性格을 갖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국경제에는 Rothchild, Morgan 등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은행자본은 아직까지도 없고 銀行(資本)이 산업자본 또는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도 없다. 오히려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관심사가 되어 왔던 것이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圖式的 信仰에도 불구하고 經濟權力이 정치권력을 지배한 일도 한국자본주의 역사상 있어 본 일이 없다. 日帝强占期에는 1937년의 「重要產業統制法」 실시로 命令經濟로 되돌아 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1910년 이후의 모든 기간에 걸쳐 경제는 항상 정치권력에 의해 지배되었었다.

李承晩 정권 시대에는 비록 경제정책의 기조가 자유기업체제의 확립이기는 하였지만 처

(22) 최초의 중상주의 사상가의 하나였던 A. Montchretién의 말.

음에는 歸屬財産의 불하와 관련하여, 또 후기에는 援助달러의 배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실질적인 所有의 비중면에 있어서도 경제권력은 항상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왔고 또 지배되었었다. 朴正熙 정권하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정부주도형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투자를 비롯한 모든 기업활동이 政府統制의 큰 틀 안에 묶였었고 다시 1962년의 「韓國銀行法」 개정으로 內資를, 「外資導入促進法」으로 外資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됨으로써 정치권력은 금융권력(money power)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 자본가(=경제권력)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멀리는 泰昌, 三護에서 시작하여 栗山, 制世, 國際의 몰락이나 現代 등의 急浮上은 모두 정치적 권력(game)의 결과이다.

따라서 히틀러 治下의 독일경제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경제까지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보는〔Ryndina *et al.*(1980, Ch. 8, 특히 p. 122)〕 지금의 마르크스주의的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바꾸어 말하여 經濟權力이 政治權力을 지배하여 兩者가 合一하든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지배하여 합일하든 막론하고 양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어 정치·경제가 癒着된 상태를 통틀어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한다면, 1960년대 이후의 한국자본주의는 이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특징짓는 것이 다른 어떤 정의보다는[23]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해관계 일치, 그 密着度와 蜜月관계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그것만큼 공고하고 조화로우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갈등이 계속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성격과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24] 그러나 小異를 버리고 大同을 부각시킨다면 제도적, 객체적 諸條件을 기준한 현단계 한국자본주의는 이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II. 開發戰略

1. 解放當時까지의 展開

한국에 자본주의가 이식, 전개되는 과정은 1876년의 開港에서 시작하여 國權을 상실하는

(23) Galbraith가 말하는 New Industrial System 또는 New Industrial State는 거의 같은 시기에 Strachey가 *Contemporary Capitalism*에서 주장한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capitalism in the last stage)보다도 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定義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단계의 한국자본주의는 Galbraith의 New Industrial System 보다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더 가깝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New Industrial System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해석된다〔Galbraith (1978, Chs. 23-9)〕.

(24) 뉴딜 당시에 있어서도 이를 둘러싼 행정부와 경제권력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지 한국에서처럼 집단간의 세력관계 내지 이해관계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1910년까지의 開化段階(opening-up stage), 일본에 강점된 이후 해방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는 日本經濟로의 編入, 예속이 서둘러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탈이 조직적으로 강화되던 植民地段階로 나눌 수 있다.

1) 開化와 制度導入

자본주의는 합리적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및 시장이라는 經濟的 要件 이외에도 合理的 國家의 존재를 전제한다. 국가는 계약사회를 위한 法的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은행설립 및 화폐의 발행 등 금융적 기초를 닦고 적절한 최소한의 정부수입확보를 위한 租稅制度를 확립하며 度量衡制度를 마련하고 所有制度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基盤 위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적인 재산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開港初期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가장 자본주의적 기업조직형태인 株式會社制度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선각자에 의해 절실히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제도요건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불완전하였으니 1876~1910년간에 市場經濟體制의 운행을 위해 불가결한 商法·民法 등 私法秩序의 체계적 마련은 전혀 없었고 公·私경제부문간의 관계와 한계를 규정한 조세제도 역시 金納制로의 전환만 있었지 근대적, 즉 자본주의적 요구에 적합한 조세제도를 도입하지도 못했다. 화폐제도 역시 本位制를 정하고 造幣局(=典圜局)을 두고 조폐공장을 건설하여 新式貨幣를 주조·발행하기는 하였지만〔趙璣濬(1979, pp. 344-54)〕 중앙은행인 (舊)韓國銀行은 1909년 11월에 가서야 설립되었다〔趙璣濬(1979, p. 372)〕. 官僚的 封建(bureaucratic feudalism)國家로부터 자본주의적 근대국가로의 전환도 1894년의 甲午更張으로 형식적으로는 시작되어 度支部, 農商務, 工務 등 衙門이 신설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적인 「법의 지배」가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본주의제도를 형식적으로나마 완비하게 되는 것은 1910년 이후의 일이었다.

企業 차원에서의 자본주의와의 접촉은 이미 개항 이전인 1875년 釜山에 일본 東京의 巨商인 三井組, 小鹿組 등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開港 당시 부산에는 70명의 상인을 포함하여 80여 명의 日本人들이 주로 經濟活動의 目的으로 이주해 있었던 것이다.[25] 韓國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국민생활에 대하여 크고 작은 충격을 주는 자본주의적 外國人企業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對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초부터였다. 理論面에서는 俞吉濬이 1882년에 會社規則을 소개하고 1883년에는 會社說을 집필하여 주식회사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절차를 소개하였다. 한편 실천적인 면에서도 평양의 大同

(25) 趙璣濬의 인용에 따를 때 80여 명의 日本人居留者 중 공관관리 및 雜職者 12명을 제외한 전부가 상인이었다고 한다〔趙璣濬(1973, p. 27)〕.

商會, 서울의 長通會社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기업이 開港地뿐 아니라 槐山, 淳昌 등지에까지도 설립되었다. 이들 회사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個人商社, 同業者組合, 또는 官營企業 등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종래의 六矣廛的 企業과는 動機·體制 등의 면에서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 활동분야도 商業部門뿐만 아니라 금융, 철도·기선·역마차 등 運輸, 광업, 제조업, 수산업 등 거의 모든 非農業部門에서 광범하게 전개되었다〔趙璣濬(1973, pp. 40-7)〕.

기업조직에 있어 前近代的 요소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운영의 主體인 기업가도 자본주의적 合理性을 갖출 수는 없었다〔趙璣濬(1973, p. 20)〕. 西洋과의 접촉이 日淺하여 「近代的 경영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하에서도 企業經營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경제적 合理性에 근거한 기업경영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26] 國權伸張·回復의 수단으로 기업을 창설한 志士型 企業家는 경제적 合理性의 부족에 추가하여 경영외적 支出이 컸을 것이고 그에 더하여 外勢 주로 일본의 暴力的 彈壓까지 가하여졌으므로 1880년대에 창설된 志士型 企業은 4반세기도 못되는 동안에 거의 파산하고 朴承稷, 白潤洙 등 경제적 合理性에만 투철하였던 企業만이 근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日本의 韓國經濟力 抹殺政策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日本帝國主義의 한국경제력 말살정책 중 주요한 것만 추리면, 光武貨幣改革을 통한 韓國商業資本抹殺과 金融支配確立, 土地調査事業을 통한 토지침탈과 한국토지자본의 파괴, 그리고 「會社令」에 의한 한국자본의 근대적 기업으로의 전환억제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光武貨幣改革

第一銀行을 尖兵으로 한 일본의 한국금융지배에 대한 저항은 민족은행의 설립과 「韓國銀行條例」의 공포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第一銀行이 한국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를 韓國銀行에 인계했던 1909년 11월 이전에 韓國金融市場은 이미 第一銀行券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었었고 특히 光武 9년(1905)의 「新貨幣條例」는 일본화폐의 유통을 公認하고 정부의 收支에 사용케 하는 한편 舊白銅貨의 통용기한을 정하고 교환 및 환수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白銅貨를 甲種, 乙種, 丙種으로 나누어 甲種은 하나에 2錢 5厘로, 乙種은 1錢의 비율로 교환해 주었으나 한국인 사이에 주로 보유되고 유통되었던 丙種은 매수하지 않았다.

(26) 이 점에 대하여 趙璣濬(1973, pp. 18-9)은 "개화기에 활동한 民族企業家의 전부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시 기업가의 정신적 자세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은 외세의 침략을 몰아내려는 民族主義였으며 (이것이) 기업창립의 제 1 차적 동기가 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기밀은 「舊貨交換細則」 제정 이전에 이미 누설되어 良貨는 일본인 및 친일적 한국인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1천만 圜이나 되는 惡貨의 대부분은 다수의 약소한 한국인 상인의 수중에 남게 되어 大金融恐慌이 돌발하여 대다수의 한국상인이 일거에 破產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저락한 白銅貨를 買集하여 화폐정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샀고 토지를 판매한 농민에게 돌아간 것은 泥土로 化해 버렸던 丙種 白銅貨뿐이었다〔趙璣濬(1979, pp. 355-63)〕.

이로 인하여 "실업계에 공황이 大起하여 商民이 閉門逃去하며 혹 飮毒自死하여 紛紛하던 동시에……구제책을 陳述하여 혹 哀訴하여 이 情狀이 天陛에 통촉되어 皇室內帑錢 중에서 35만 圜을 하사하옵시고 위선 시급한 공황을 구제하고……商民을 구제하라"〔趙璣濬(1973, p. 127)〕 하였으나 이 중 30만 圜은 일본인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 관제하에 收入되어 오히려 한국금융을 지배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5만 圜만이 지출되었다. "目賀田 財政顧問이 계획한 금융공황 해결책은 度支部 관할하에 신설된 금융통제기관에 土着資本을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1905년 여름 이래 야기된 金融恐慌은 한국인 土着商人資本을 몰락시키는 한편 1890년대 후반기 이래 창설되었던 민족금융기관도 閉業의 난국에 몰아 넣었다." 〔趙璣濬(1973, p. 127)〕 光武貨幣改革으로 환매된 舊貨幣額이 金貨, 銀貨, 銅貨 등 모두 합하여 13,370,949圜 87錢 9厘였으므로 고철조각으로 바뀌어 버린 丙種 白銅貨 규모가 1천만 圜이었다는 金光鎭 論文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한국인은 光武貨幣改革으로 인하여 화폐자본의 42.8%를 상실한 것이 된다.

(2) 土地調査事業과 土地侵奪

"원래 조선에 있어서의 토지제도 및 地稅制度는 수백년래로 문란을 극하여 거의 그 經紀가 없어……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地稅賦課의 정리는 하루도 이를 등한히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실로 토지조사의 急施를 필요로 하게 된 主因"〔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1918, pp. 1-2)〕이라는 구실 아래 일제는 1905년부터 준비한 후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1918년 11월에 土地調査事業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를 封建的 유산을 近代的으로 청산한 공헌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評價하는 학자도 있다〔金俊輔(1974, p. 80)〕.

그렇더라도 이로 인하여 i) 小作農民의 관습상의 경작권, 賭地權, 開墾地 경작권, 入會權 등 여러 권리가 거부되어 소멸되었고 ii) 다수의 宮有地, 投托地, 民有地, 未申告土地, 河川邊空地, 森林, 山野, 未墾地 등이 조선총독부 소유로 강탈되었고 iii) 地稅收入源泉이 확보됨으로써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기반을 마련하였고 東拓을 비롯한 일본자본의 土地所有가 增大되며 동시에 공동체의 遺制的 성격을 가진 토지를 점탈하게 된 한

국인 대지주와 日帝 사이에 구조적 凝着이 생겼으며 iv) 그 반면 농민층분화, 소작료 앙등, 그로 인한 小作農의 沒落과 流移民 및 임금노동자화가 가속화되었다〔愼鏞廈(1979, pp. 83-102)〕.

土地調査事業의 결과 抗日地主들의 토지는 未申告土地 기타로 해서 모두 탈취되었고[27] 이에 반하여 植民地支配를 위한 制度裝置, 일종의 middleman으로 일제가 육성한 半封建的 寄生地主의 수중에 전체농지의 50.3%가 집중되었다〔趙璣濬(1977, p. 305)〕. 이로써 민족자본으로서의 土地資本은 侵奪, 파괴되고 買辦的 土地資本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3) 「會社令」과 關稅制度 存置

일본은 생산력수준이 낮은 일본농업의 機能不全을 메우기 위한 쌀 등 1次產品 供給市場으로서, 또 건설도상에 있는 저품질의 工業生產物에 대한 販賣市場으로서 한국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패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진출에 心血을 쏟고 그 결과 얻어진 經濟的 침투를 발판으로 다시 政治的 進出을 도모하는 악착스러움을 1876~1905년간에 계속하였다.[28] 그러나 한국을 强占한 1910년 8월에 있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경제력은 새로 얻은 식민지인 朝鮮에서 외국자본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기는 고사하고 植民地經營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能力도 없었고 따라서 한국민족자본과의 경쟁도 위험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마련된 정책이 舊大韓帝國關稅制度의 存置와 「會社令」의 제정이었다. 즉 식민지 朝鮮을 일본과 동일한 關稅線 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일본자본의 자유로운 식민지移動을 막고 自國 내에서의 공업건설과 경제력강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이러한 空白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民族資本 및 외국자본의 경제력기반이 構築·强化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선에 있어 회사기업에 대한 지식이 아직 보급되지 않고 內地(=日本)실업가 또한 朝鮮의 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이같은 틈새를 이용하여 不正泡沫會社를 일으켜 內地 및 朝鮮의 자본가로 하여금 不測의 손해를 입히는 동시에 건실한 조선산업의 발달을 저지시킬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許可主義에 의하여

(27) 이 같은 토지침탈은 당연히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니 전국의 土地調査總筆地 19,107,520필지 중 99,138필지에서 소유권분쟁이, 307필지에서 경계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는 정식으로 裁定이 신청된 건수이므로 표면화되지 않은 紛爭件數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趙璣濬(1979, p. 305)〕.

(28) 이같은 사정에 대하여 일본인 史學者인 旗田巍(1951, pp. 177-8)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자본주의적 성장은 식량보급을 필요로 하고 조선이 그 주요기지가 되었다. 이 점은 日本이 敗戰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자본주의는 그 상품시장으로서 또 식량시장으로서 朝鮮에 진출했다.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는 朝鮮은 불가결의 市場이었다. 이 점에 일본의 진출이 淸國의 그것과 다른 끈덕진 힘이 있었고 또 정치적 패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강력히 진출할 이유가 있었다.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은 당연히 정치적 패퇴를 만회하고 경제적 진출을 더욱 촉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설립을 統制할 필요가 있었다"〔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1939, p. 59)〕는 명분 아래 「會社令」을 1911년 1월에 선포하여 일본으로부터의 資本流入 즉 일본국내 工業化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본유출을 人爲的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韓國의 민족자본이 近代的 企業組織으로 탈바꿈하여 성장하는 것도 저지하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노렸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시의 戰爭景氣로 자본축적과 공업건설을 예상외로 급속히 진행시킬 수 있었던 日本經濟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植民地收奪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光武貨幣改革, 土地調査事業 및 「會社令」에 의하여 그 경제적 잠재능력을 크게 손상당한 韓國民族資本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졌기에 强占後 "약 10년간 商品流通과 자본이동을 제한해 왔던 舊大韓帝國 관세제도"를 1920년 8월에 폐지하였고 이보다 앞선 1920년 3월에는 「會社令」도 철폐되었다. 철폐이유로서 그들은 强占後 "朝鮮人 經濟力의 발전이 현저하고 회사기업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 진보되었고 일본실업가 또한 朝鮮事情을 周知하게 되어 이 令의 存置는……오히려 기업발달을 沮害하는 情勢"〔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1939, p. 59)〕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면서 뒤이어 유럽大戰을 계기로 日本經濟의 팽창과 그 축적된 자본의 外地進出壓力을 들고 있다. 이러한 記述과 또 1910년 현재 15.6%이던 韓國人所有會社의 比重이 1919년 12월말 현재로는 14.5%로 감소되었다는 사실 및 다음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韓國人과 日本人의 會社設立申請比率과 영업중인 會社比率 등을 본다면 「會社令」이 진정으로 의도하

〈表 1〉 會社統計 (1919年 12月 31日 現在)　　(單位：件, %)

民族別	申請件數	營業件數
韓國	84 (17.8)	63 (14.5)
日本	306 (64.7)	339 (77.9)
韓・日	80 (16.9)	22 (5.1)
日・外	1 (0.2)	1 (0.2)
外國	2 (0.4)	10 (2.3)
計	473 (100.0)	435 (100.0)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 作成.

였던 바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의도적인 韓國民族資本 抹殺政策의 결과 1921년에 기업체수의 15.5%, 자본금총액의 4.3%를 점했던 한국민족회사는 1929년에는 회사수는 19.3%로 늘었지만 자본금總額에서는 1.3%로 크게 줄었고 회사당 資本金은 평균 46만 7천円에서 11만 7천 円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3) 植民地下의 跛行的 成長戰略

식민지하의 經濟發展戰略은 첫째로 앞서 본 바와 같이 民族經濟의 생명력, 成長潛在能力을 抹殺하고 그 일환으로서 기술을 독점하며 둘째로 人的, 物的 자원을 최대한도로 收奪, 개발·이용하며 셋째로 이처럼 개발·수탈되는 韓國經濟를 日本經濟의 補完部門으로 예속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경제의 隷屬化戰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쌀單一栽培型 產業構造

만성적인 食糧不足에 시달리던 일본은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食糧不足이 尤甚하여 해마다 3백만 석 내지 5백만 석의 외국쌀을 수입할 필요에 촉박되었으며 더욱이 쌀값의 가속도적 상승은 1916년에 쌀소동을 야기시켰을 정도로 소위 식량문제해결은 朝野의 重大關心事였다. 이에 朝鮮總督府는 1920년에 조선에서의 쌀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또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日本帝國의 食糧問題解決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위 産米增殖計劃을 立案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던 것이다〔鈴木武雄(1942, pp. 129-30)〕. 당초의 産米增殖計劃은 1920년 이후 30년간에 80만 町步의 토지를 改良하여 쌀생산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우선 第1期計劃으로 1920~35년간에 總工事費 1억 6,800만 円을 투입하여 42만 7,500町步의 토지를 改良하여 920만 석의 쌀을 증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차질이 생겨 1925년까지의 6년간에 겨우 9만 町步의 토지를 改良했을 뿐이었다.

이에 일제는 計劃을 修正하여 1926년 이후 15년간에 旣成畓의 灌漑改善 19만 5천 정보, 畓으로의 地目變更 9만 町步, 개간 및 간척 19만 5천 정보, 합계 35만 정보의 土地改良을 실시하여 280만 석, 또 이들 土地改良地區에 施肥增加, 耕種改良으로 192만 석, 합계 427만 석을 증산하고 다시 기타의 旣成畓 139만 정보에 대한 농사개량으로 344만 석, 총계 816만 석의 産米增殖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하여 3억 5,169만 2천 원의 豫算을 생각했었다. 1919년의 畓面積이 154만 6,600정보였고 쌀생산량이 1,270만 8천 석이었으므로 816만 석의 증산계획은 15년간에 64.2%, 연평균 4.3%의 生產增大를 實現하려는 야심적이면서도 거창한 計劃이었다.

그러나 1930년의 공황으로 일본경제는 오히려 쌀값 下落과 쌀의 供給過剩이 생겼고 그 결과 식민지로부터의 쌀輸入制限 등의 주장이 커져 수정계획 역시 1934년에는 中斷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939년에 다시 增產計劃이 수립되어 1940~50년간에 680만 석을 증산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같은 産米增殖計劃은 태평양전쟁의 시작과 일제의 패망으로 완성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쌀栽培面積은 1915~19년간의 평균 152만 6천 정보에서 1935~39년의 163만 7천 정보로 7.3% 증가하였고 쌀生產量은 1,369만 4천 석에서 2,205만 8천 석으로 61.1% 增大되었으며 生產性은 町步當 8.97석에서 13.47석으로 50.2%나 상승되었다.

그리하여 對日 쌀輸出量은 1915～19년의 연평균 100만 석에서 1932～36년의 860만 석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2) 南棉北羊政策

開港 以來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자본주의적 機械工業製品에 對抗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던 한국의 綿織工業도 1895년을 전후하여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면직물에 대신하여 1차산품인 棉花의 對日輸出이 1901년부터 시작되었다.[29] 일본자본주의를 위한 原料供給市場으로서 韓國을 개발·수탈하려는 日本의 政策은 이미 1905년부터 한국에 美國棉 즉 陸地棉의 栽培를 시작케 하였고 1912년에는 6년간에 재배면적을 100만 정보로 확대시키려는 陸地棉奬勵 第1期計劃을 세워 1918년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뒤이어 수립된 第2期計劃은 栽培面積을 25만 정보로 늘리고 생산고는 2.5억 근으로 증가시킬 예정이었는데 1925년까지는 재배면적 13만 7,600정보, 生產高는 1.7억 근으로 늘릴 수 있었다.

日帝가 滿州까지 强占한 직후인 1933년에는 宇垣 總督에 의하여 南棉北羊政策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재배면적 50만 정보, 生產高 6억 근이 계획되어 第1期計劃期間(1933～43년) 중에 25만 정보, 3억 근의 목표가 설정되어 1939년 현재 재배면적은 陸地棉 22만 2천 근, 在來棉 3만 1천 정보로 총 25만 3천 정보, 生產高는 육지면 1.9억 근, 재래면 0.2억 근 合計 2.1억 근에 이르게 되었다[鈴木武雄 (1942, pp. 156-9)].

한편 1차대전 당시의 羊毛需給不均衡을 계기로 羊毛自給自足을 계획한 일본은 한국에 30만 마리의 양을 사육키로 일찍부터 計劃한 바 있었다. 이는 宇垣 總督의 南棉北羊政策으로 구체화되어 1934년에 제1차 緬羊增殖計劃을 세워 西北 6개도 농민 每戶當 3～5마리를 副業으로 사육케 하였고 이어 1936년부터 실시되었던 제2차 緬羊增殖計劃에서는 이를 生產力擴充 15개 品目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중요시하였으나 1939년까지도 면양사육두수는 3만 8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鈴木武雄(1942, pp. 168-9)]. 이처럼 成果는 비록 不振하였지만 北羊政策은 南棉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을 일본의 纖維產業을 위한 原料供給市場으로 편입, 종속시키려는 意圖的·組織的 정책이었던 것이다.

(3) 農工併進과 大陸兵站基地政策

(29) 1876년의 纖維製品輸出을 보면 면화수출은 없고 면제품수출이 9,957円, 견제물수출이 725円, 섬유제품 수출총액은 10,691円이었다. 1882년에는 면화수출 15,915円, 면제품수출 103,534円, 견제품수출 67,570円, 麻제품 29,014円, 섬유제품 수출총액은 216,034円으로 수출총액의 12.2%를 점하였었다. 그러던 것이 1905년에는 면화수출 2,445円, 면제품수출은 거의 없었고 絹製品 수출이 2,921円, 麻제품수출이 101円으로 바뀌었고 1901년에는 면화수출 5,277円, 견제품·마제품 輸出合計 2,402円이고 면제품은 수출시장에서 탈락하였다[梶村秀樹(1977, p. 26)].

Baran[30] 등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빈약한 지하자원에 시달리던 日本은 한국에 대한 支配力을 확립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資源調査·開發·收奪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관심은 새로이 확립한 金本位制度의 유지를 위하여 이미 유통되고 있는 金貨·金地金을 수탈하는 한편 金銀만을 重點的으로 開發하려는 것이어서[31] 1922년에 보다 철저한 지하자원 調査結果인 『韓國鑛物誌』가 발간되어 한국의 광물 종류가 「石炭 및 自然木炭을 제외하고도 113種」임이 밝혀진 다음에도 얼마간의 鑛山開發景氣가 民間企業 사이에서 생겼을 뿐 일제에 의한 조직적 개발·수탈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1911~14년간의 제 1 회 發電水力調査에서 理論發電力이 5만 7천 kw로 추정되던 것이 소위 「流域變更에 의한 發電技術」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실시된 제 2 회 發電水力調査(1922~26년)에서는 이론발전력이 225만 kw로 추정되고 뒤이어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설된 赴戰江發電所에서 1929년 11월부터 送電이 시작되면서 광업과 공업에 대한 정책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日帝의 소위 朝鮮 4大 광산물인 금, 철, 석탄, 흑연 이외에도 銅, 크롬, 망간, 重石 등 32種 도합 36種이 「朝鮮鑛業令」에 의해 중요광물로 지정되고 더욱이 위에 말한 8개 鑛物 以外에 니켈, 코발트, 안티몬 등 17개 광물 도합 25개 광물이 國防產業上 중요한 것으로 「朝鮮重要鑛山物增產令」에 지정되기에 이르렀다〔鈴木武雄(1942, p. 181)〕.

이같은 전력자원 및 지하자원의 개발은 일본의 世界制覇野慾 특히 그 一環으로서의 대륙진출정책과 맞물려 侵略을 위한 產業據點으로서 韓國經濟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이용·수탈하려는 식민지정책으로 표출되었다. 農工併進과 兵站基地論에 입각한 한국산업구조 전환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일제 특히 軍閥은 血盟團에 의한 테러 등을 이용하여 軍國主義化 및 그 일환으로서의 朝鮮工業化에 비협조적이었던 三井, 三菱 등 일본을 대표하는 大財閥의 한국개발을 강요하고[32] 소위 農工併進의 이름 아래 한국 특히 북한에 있는 전력자원과 지

(30) Baran(1962, p. 186)은 자연자원의 희소함을 민중생활의 후진 및 빈곤과 더불어 일본이 植民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들며 다시 "일본의 旣知의 自然的 富는 개발노력이 크게 경주된 후 1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공업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며 유일한 예외적 특징은 수력발전을 위한 거대한 능력뿐"이라고 한 Zimmerman의 말과 또 "일본은 외국제조업의 시장으로서도 또한 서유럽공업의 원료공급지로서도 매우 빈약하였다"는 Norman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31) "1904~6년의 農商務省 조사결과보고인 『韓國鑛業調査報告』(1906년) 같은 것도 차라리 金鑛調査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금광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고 鈴木武雄(1942, p. 180)은 말하고 있다.

(32) 野口 등 新興軍需財閥의 한국진출이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에 반하여〔野口系의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자본금 1천만 円)설립이 1925년이었다〕 三井, 三菱 등의 진출은 1933년부터 시작되었으며(三井系의 조선맥주주식회사와 三菱系의 昭和麒麟맥주주식회사의 설립이 1933년이었다)

하자원을 수탈하여 대륙침략을 위한 산업기지를 건설하려 하였다. 朝鮮産業經濟調査會가 1936년에 조선총독에게 제출한 답신서에서 "朝鮮의 산업경제는 現下……국제정세에 비추어 ……國策上 조선이 地理的 및 資源的으로 짊어져야 할 重責으로 보아· ·속히 戰時産業中心政策에서……農工併進을 本旨로 하여……農本을 배양하는 한편……광공업은 그 비약적 진흥을 기함과 동시에 일본, 만주의 산업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帝國 전반의 需要充足에 충분한 對備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鈴木武雄(1942, pp. 97-9)〕는 것을 朝鮮産業經濟開發에 관한 一般方針으로 권고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조선의 大陸兵站基地論의 시작인데 "병참이란 말은 戰時經濟와 관련된 그 본래의 의미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사용된(朝鮮經濟의 경우에 있어서는——인용자) 경제전쟁의 據點이라는 의미로 아울러 갖고"〔全國經濟調査聯合會朝鮮支部(1939, p. 75)〕 있는 것으로 鈴木武雄(1942, p. 296)에 의할 때 "대륙병참기지론은 요컨대 대륙일각인 조선에 제2의 內地(=일본본토)라고 할 만한 각종 産業이 고도로 발달한 産業圈을 형성하여 一朝有事時에 있어서의 대륙경제권의 자립을 꾸려갈 수 있는 産業的 據點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最精銳 부대였던 關東軍을 만주에 주둔시켜 이를 대륙침략의 일선기지로 삼고 한국의 人的, 物的 資源을 최대한도로 개발, 이용·수탈하여 侵略戰爭能力을 최대한도로 높이면서 그 부담을 전적으로 한국경제에 떠맡긴다는 것이 大陸兵站基地論의 요체였으니 이는 "옛부터 만주국에는 소위 現地調辨이란 말이 있는데 現地調辨主義와 대륙병참기지란 유사한 개념"〔鈴木武雄(1942, p. 297)〕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東亞食糧基地로서의 쌀의 조선, 경중업·중공업의 비교적 파행되지 않는 발달을 본 공업의 朝鮮, 요컨대 農工併進하는 朝鮮은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의 基地的 適性을 가장 많이 갖추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대륙에 있어서 가장 內地的인 산업거점이며 그 加一層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륙전진병참기지의 구축"〔鈴木武雄(942, p. 304)〕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는 비단 일본경제에 단순히 編入·隷屬된 것이 아니라 戰爭經濟的 歪曲까지도 强制되었던 것이다.

(4) 円블록과 對外遮絶

所有 및 경제구조란 면에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된 依存經濟化한 한국경제는 南部사할린에서 日本列島를 거쳐 대만에 이르기까지 舊日本帝國領土에 의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이 봉쇄되어 있었고 북으로는 만주국에 의해 차단되어 地政學的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진출규모도 주요한 회사만 보아 三井系가 4社에 자본금 2,950만 円, 三菱系가 3社 2,500만 円이었음에 비하여 野口系가 5社 5,020만 円이었다〔趙璣濬(1979, pp. 437-8)〕.

무역면에서도 일본경제권 즉 소위 円블록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통계적으로 볼 때 韓國의 輸出貿易은 일본에 대한 것이 1924～26년의 93.1%에서 1937～39년의 78.6%로 크게 줄어든 것같지만 1939년의 경우 총 22억 6,990만 円인 일본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중 円블록에 속하는 關東州(遼東半島), 만주국 및 汪兆銘 괴뢰정권하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2억 6,170만 円으로 전체의 96.9%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수출의 98% 이상이 일본 및 그 强制占領地域 즉 円블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1939년 현재 일본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수출(=對日輸入)에 있어 12억 2,940만 원, 23.7%로 1위, 수입에 있어 7억 3,690만 원, 17.5%로 미국에 이어 제 2 위였으며 수출입을 합한 무역총액에 있어서는 20.9%로 제 2 위국인 미국의 17.5%보다도 월등히 컸다.

2. 解放以後의 開發戰略

해방 이후의 韓國資本主義 開發戰略은 대략 3단계로 전개되었다. 제 1 단계는 1945년부터 1961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美軍政當局과 정부수립후의 李承晩 政權에 의하여 體制的으로는 市場經濟體制로의 복귀가 추진되고 實物面에서는 미국의 無償援助를 바탕으로 소비재산업이 건설되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제 2 단계는 1962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체제적으로는 官主導型 計劃的 開發이란 이름 아래 자본주의적 命令經濟로의 후퇴가 있었고 實物面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自給自足과 全面的 工業化 그리고 강력한 輸出드라이브가 전개되었던 시기인데 이 단계는 명령이 효율적이었던 1962～73년의 前期와 노동력 무제한 공급조건의 소멸과 더불어 成長效率이 둔화되고 명령은 오히려 가중되고 多岐化되어 가던 1974～81년의 後期로 나눌 수 있다. 제 3 기는 1982년 이후로 비록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명령을 축소하고 시장을 부활시키며 逆進的 再分配를 수반하는 成長第一主義戰略에서 명색이나마 分配正義와 福祉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1) 市場經濟指向的 開發戰略(1945～61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45～61년간의 주요한 韓國資本主義 開發戰略은 自由企業原理에 입각한 市場經濟體制의 부활·확립과 美國援助에 근거한 소비재산업중심의 공업화였다고 할 수 있다.

만주침략을 계기로 準戰時經濟體制에 들어갔던 일본은 1937년 3월 한국에도 「重要產業統制法」을 적용시켜 종래의 시장경제에서 파시스트 命令經濟로 한국경제체제를 轉換시켰다. 즉 1937년 7월의 金融對策, 10월의 「資金調整法」 등을 계기로 金融統制가 강화되었고 또 8월에는 26개 주요품목에 대한 「改正暴利團束令」의 시행, 1938년 9월의 朝鮮總督府物價委員會의 설치 등을 계기로 價格統制(=公定價格制度)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33년 9월의

「臨時輸出入措置法」으로 무역통제가 시작되어 각종 「輸出品檢查規則」의 개정을 통하여 통제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1937년 이후 잇따라 실시된 「配給統制法」에 의하여 철강공작물, 선철·주물, 동, 백금, 스테이플 파이버, 금, 가솔린·중유, 비료, 면화, 면사, 생고무 등 原資材 중심의 物資統制가 끝내는 곡물, 설탕, 신발 등 모든 消費財에 대한 配給制로 발전하였다. 한편 1938년 5월에는 「國家總動員法」이 선포되고 또 「朝鮮重要鑛產物增產令」이 시행되어 생산증대가 소비억제와 동시에 강제되고 쌀 등 중요 농산물의 경우 소위 供出이란 이름으로서 低價强制買上이 강요되었다〔全國經濟調查聯合會朝鮮支部(1939, 第3部 第1, 3章)〕.

근 10년에 걸친 파시스트 命令經濟下에서 해방된 韓國民에게 경제통제나 경제계획이란 곧 생산측면에서의 收奪과 소비측면에서의 困窮·缺乏을 연상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美軍政當局 및 그 뒤를 이은 李承晩 政府의 정치이념인 미국식 민주주의와 그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自由企業原理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는 통제경제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일치되어 명령경제적 잔재는 급속히 불식되어 갔다.(33)

그러나 配給·統制의 除去와 市場機能의 回復만으로는 35년간 수탈당한 한국경제에 시장경제체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었다. 1953년의 1인당 GNP가 67달러였다는 사실에서 보듯 시장을 통한 교환이라는 財產的 活動을 할 수 있는 所有의 기반이 국민에게는 없었고 한편 반 세기 가까운 민족자본말살정책의 결과 1940년 현재 工業資產(공칭자본금 기준)의 94%가 일본인 소유였는데〔朝鮮銀行調查部(1947, p. I-100)〕 이것이 해방과 더불어 歸屬財產으로서 국유화되었으므로 시장경제의 주체인 자유로운 私企業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 밑에서 실시된 것이 귀속재산의 民間拂下와 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農地改革이었다.(34) 이 두 가지 조처는 비록 이를 추진한 정책당국자에게 그러한 생각이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事後的으로 고찰할 때 농민 및 비농업부문의 사업가에게 財產的 活動을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 준 것으로 市場經濟體制의 수립을 위해서는 不可缺한 선행조처였던 것이다. 農地收革은 종래의 지주·소작인 사이의 金融關

(33) 쌀配給制 廢止에 관한 초대 農林長官 曹奉岩의 실수는 這間의 사정을 잘 설명해 준다. 즉 그는 長官 취임 후의 농촌시찰에서 농민의 강력한 요구를 들어 쌀供出制의 폐지를 약속했으나 歸京 후 도시에서의 쌀값安定 및 쌀需給均衡과 관련된 서울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하여 쌀공출제 폐지를 取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34) 1947년 현재 전국 2억 1,930만 정보의 田畓 중 60.5%인 1억 3,250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農地改革으로 인하여 전체농가호수의 48.6%를 점했던 순수한 소작농가 100.5만 호는 물론 77.4만 호의 自小作農 및 小自作農이 농지개혁의 혜택을 입었다〔崔應祥 編 (1959, pp.123-30)〕.

係를 단절시켰다는 등의 內部的 요인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農地補償證券의 산업자본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外部的 要因에 의하여, 또 귀속재산불하는 일제의 경제적 독점과 愚民化政策으로 이 事業家·經營人 機能이 부족하였고 일본과의 경제적 단절로 인하여 依存構造를 가졌던 한국경제에서 생산재 및 중간재 등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였다는 內部的 요인과 그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기계시설의 파괴·소실이란 外部的 요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그 후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농민에게 재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物質的 基盤인 농지를 마련해 주었고 歸屬財產의 경우 가옥 등 비생산적 재산의 경우는 농민에 대한 농지의 경우만큼 國民經濟的으로 의미있는 재산을 형성해주지는 못하였고 공장 등 生產的 財產의 경우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멸실되어 물질적인 면에서는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私的 資本家가 私企業을 소유·경영한다는 (비록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길 수 없었기는 하지만) 귀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은 私有에 근거하여 민간기업가가 市場을 상대로 하는 경제활동이 核心을 이루는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의 도입에 적어도 經濟體制史的으로는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한국전쟁은 소위 Walker Line 밖에 있던 지역 즉 대략 慶尙南北道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던 社會間接資本과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산업부문의 生產施設을 대부분 파괴하였다. 그 결과 休戰 이후의 한국경제는 파괴된 생산시설을 復舊시킬 자본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消費物資의 공급조차 不足하였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회복·향상과 생산시설의 再建을 위한 자금은 모두 해외로부터의 無償援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 美國援助와 UNKRA 援助의 두 가지였다. 그리하여 1945~52년간에 총 8억 5,250만 달러, 연평균 1억 660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미국원조는 1953~61년간에는 총 21억 6,060만 달러(연평균 2억 401만 달러)에 이르렀고 특히 집중적으로 제공된 1955~58년간에는 연평균 3억 1,690만 달러로서 당시 한국 국민총생산의 19.8%에 이르른 것이었다. 한편 이 기간(1953~61년)중 UNKRA 원조는 1억 2,200만 달러이었으므로 무상의 外國援助總額은 2억 2,830만 달러, 연평균 2억 5,360만 달러였다.

1952년에 시작되어 1960년에 종결된 총 1억 2,210만 달러였던 UNKRA 원조는 본래 UNKRA 회원국들이 韓國經濟의 再建·復興을 위해 제공한 無償의 자금원조였다. 따라서 원조액의 70.5%가 施設財形態로 제공되어 年產 36만 톤 규모의 閒慶시멘트공장 또는 年產 12만 상자 규모의 仁川板유리공장 등 戰後再建을 위한 基幹產業建設에 투자되었으며〔洪性囿(1965, pp. 286-92)〕 일부분이 朝鮮水產輸出 浦項工場 등 소비재산업 건설에 투자되었다.

UNKRA 원조와는 달리 미국원조의 主宗을 이루었던 AID 원조는 反共保壘로서의 한국의 국방력강화·유지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韓美間의 相互防衛條約에 의하여 한국은 60만의 人力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이들을 부양·무장시키기로 합의하였다. 60만 대군의 계속유지는 5~10년의 수명을 갖는 施設財 供與로서는 불가능하고 해마다 소비되어 없어짐으로써 동일한 규모의 수요를 再創出하는 消費財를 供與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救恤 목적으로 제공된 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and Relief in Occupied Areas)나 CRIK(Civilian Relief in Korea) 원조 및 잉여농산물재고처리 및 해외시장개척이란 二重目標를 갖고 1956년 이후 새로이 제공되기 시작한 PL 480 원조와 마찬가지로 AID 원조도 消費財中心의 구성을 가졌으니 施設財援助(계획원조)가 전체의 30%, 消費財 및 原資材援助(비계획원조)가 70%로 책정되었었다. 즉 해마다 소비됨으로써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그리고 그 販賣代錢을 國防費支援에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加工施設을 제공하는 것이 시설재원조의 목적이었다.

경제부흥 특히 工業化를 위한 資金源泉을 미국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35]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財源의 성격에 제약되어 消費財工業中心의 경제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50년대의 공업화가 소비재공업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는 미국원조의 성격 이외에도 몇 가지 國內的 要因이 있었다. 첫째로 시장경제체제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消費財產業이 먼저 발달하고 자본재산업이 그에 뒤따르는 것이므로[36] 消費財產業中心의 工業化에 政策當局者 중 아무도 異論이 없었으며 오히려 마르크스이론과 그에 근거한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생산재공업(제1부문) 우선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철저한 反共國家였던 당시의 한국에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53년의 1인당 소득이 61달러였고 1961년에 가서도 73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당시 한국의 생산력수준은 낮고 따라서 生活水準도 비참하였다. 이는 바로 消費財供給의 심각한 不足을 말하는 것으로 제1차 生產財產業을 먼저 건설하여 소비재산업을 위한 기계설비를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국산기계를 이용하여 소비재를 생산한다는 것은 다수 국민에게는 그대로 餓死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생활수준은 소비재산업 건설을 위한 資本懷妊期間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고 이것이 消費財中心工業化와 輸出不振의 큰 原因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公定換率이 1달러에 180원이었을 때 소비재수입을 위한 정부보유달러 公賣時勢는 평균 500원이 넘었음에 반하여 시설재수입을 위한 公賣달러 時勢는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기

(35) 1953~61년간에 해외저축률은 연평균 8.0%로 국민저축률 4.1%의 거의 2배에 달하였다.
(36) 소위 Hoffman 비율은 이러한 법칙에 대한 實證이라고 할 수 있다〔Hoffman(1958)〕.

업가들의 近視眼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휴전이 성립된 다음에도 한국기업가들은 消費財의 輸入販賣에 전념하고 消費財生産을 위한 공장건설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국경제(의 현재뿐 아니라 장래)를 짊어질 기업가들의 공장건설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정치지도자들의 그것만도 못하였기 때문에 李承晩 정부는 달러당 60원이라는 공정환율의 3분의 1 가격으로 시설재구입을 위한 外貨를 기업가에게 特惠拂下해 준 것이 非一非再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의 건설·확장보다는 最終消費財의 輸入販賣를,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기존 시설의 초과가동으로 資本回轉率을 높이는 데 힘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30 對 70이던 시설재수입 및 소비재수입을 위한 미국원조의 실제집행비율은 施設財 27.6% 對 消費財 및 原資材 72.4%로 그나마 적게 배정된 것마저도 消盡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액을 기준한 경공업 對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1960년 현재 77.4% 對 22.6%로 不均衡的 工業化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1958~59년에는 소비재산업에 과잉생산공황이 일어나 4·19혁명의 경제적인 遠因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2) 計劃的 開發戰略과 命令經濟(1962~81年)

시장경제원리에 투철했던 李承晩 政府는 UNKRA 회원국들의 자금지원으로 초년도 成長率 15%, 최종연도 成長率 5%, 5개년 평균성장률 8.8%를 목표로 하는 소위 Nathan 계획을 순전한 反計劃偏見(anti-planning bias) 때문에 거부하였고〔Adelman(1969, pp. 15-6)〕 그로 인하여 미국을 제외한 UNKRA 會員諸國이 UNKRA 원조를 대신할 본격적 計劃援助에서 脫退함으로써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의 전후복구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低成長에 대한 불만과 1955년 4월 Bandung에서의 Asia-Africa 회의에서 선언된 국민경제계획의 실시와 산업의 多岐化 특히 공업화요구는 한국에서도 경제계획의 수립·실시에 대한 요구를 크게 만들었다. 이러한 計劃化 熱望에 굴복하여 李承晩 정부는 前半期 3개년, 後半期 3개년의 經濟計劃案을 1959년에 완성하여 1960년에 閣議에서 확정시켜 그 해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Adelman(1969, p. 12)〕. 그러나 이 計劃案은 4·19혁명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채 張勉 정부에 인수되어 5個年計劃으로 修正되었으며 다시 5·16쿠데타 이후 外資依存的이며 成長爲主의 것으로 변형되어 1962년부터 실시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개발전략은 官主導型의 計劃的 開發戰略으로 크게 바뀌었다.[37]

(37) 計劃的 개발이 朴正熙 정권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천되었다고는 하지만 朴正熙를 비롯한 執權軍部勢力이 경제개발계획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세력으로 등장한 "학생과 지식인 사이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힐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1차계획기간 중에도 두 번씩이나 커다란 修正을 가졌으며 이처럼 마음대로 뜯어고친 계획안에 대해서조차도 충실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Adelman(1969. pp. 4-5)은 "1962년과 1963년의 흉작으로 제 1 차계획原案은 실질적으로 忘却되

이제 朴正熙體制 하에 추진된 1962~81년간의 한국자본주의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命令經濟로의 復歸

朴正熙 정부하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행정조직을 관장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1930년대 이후의 파시스트 命令經濟下에서 사상과 인격을 형성했으며 파시스트 命令經濟機構의 말단에서 실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철저한 파시스트였던 朴正熙의 정치권력기반이 안정되어가던 1960년대 중엽 이후 그의 주변에 결집하기 시작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命令經濟體制를 構築하면서 市場機制를 排除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工業化된 근대국가의 토대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全體의 이익이 특수한 이익에 優先"되도록 해야 하며 "國家는 국민의 경제생활보장 및 자유의 향유를 위하여 積極的 機能을 수행" 할 것이고 "모든 국민은 國家의 命令에 服從하지 않으면 안된다"〔朴正熙(1962)〕고 하여 "무엇을 生產하고, 어떻게 生產하며 얼마에 팔 것이냐"하는 데 대한 決定權을 기업으로부터 빼앗아 政府 手中에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價格統制는 구두닦는 값에까지 이르고 輸出은 산업별, 조합별, 기업별, 해외지역별, 海外公館別로 목표량이 割當되었고 金融의 경우도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貸出하라는 것이 행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指示되었고 기업의 投資計劃도 정부에 의하여 指示되고 命令되었다. 더욱이 1962년의 「韓國銀行法」 改正 등으로 內資를 완전히 장악한 정부는 1960년대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外資 역시 「外資導入促進法」에 의하여 政府가 掌握하였고 이처럼 國內外源泉으로부터의 자금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命令의 어김없는 遂行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였다.

命令經濟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補助金 및 減免稅 등 財政特惠와 差等利子率 및 資金配定優先 등 金融特惠가 적극활용되었지만 이에도 만족하지 않은 朴正熙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가 "도시건설도 직접 살피며 농촌의 경지정리도 직접 나가서 하고 山間의 造林에도 앞장서며 전천후 農地造成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어업전진기지나 공장건설에도 부지런히 찾아다녀 그 진도까지도 激勵하는"〔청와대비서실(1975)〕 監視體制를 수립하고 명령에 충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企業解體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2) 外延的 發展戰略

었으며 원안의 성장목표율을 大幅的, 恣意的으로 引下한 1964년의 修正案도 대부분 두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朴正熙정권이 계획적 개발에 대하여 價値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경 이를 政治的 統制手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였으니 「計劃案의 責任完遂」는 3選改憲을 위한 가장 좋은 구실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李承晩 정부하에서 마련된 7個年計劃은 人間資本을 존중하며 국내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진보적·민족주의적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실시된 5個年計劃은 이러한 성격 중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글귀만 남겨둔 채 資本中心의 開發戰略을 具體化하였다. 즉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進路는 공업화를 통한 産業의 近代化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형성이기 때문에 국내저축의 증대와 외자도입에 1차적으로 힘을 기울이기로"〔청와대비서실(1975, p. 18)〕 한 朴正熙 정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감소일로에 있던 미국의 無償援助增額을 위해 努力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 얼마 후인 1961년 8월 29일에 復興部長官을 단장으로 하는 對日借款交涉團 派遣을 결정하였다〔韓國銀行(1968, p. 83)〕. 그러나 對日借款交涉은 失敗하고 무상원조는 1961년의 1억 9,920만 달러에서 1962년의 2억 3,230만 달러로 약간 增額되었으나 1955~58년 평균의 3억 1,690만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의 2억 4,540만 달러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연평균 7%란 目標成長率을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强制貯蓄을 통한 자본조달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1963~64년에 연평균 27.8%란 超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國民貯蓄率을 1960~61년의 평균 3.1%에서 8.7%로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國民의 抵抗은 1963년부터 시작되어[38] 1965년 7월에 최고조에 달한 外換危機와 상승작용하여 有償의 借款導入에 의한 외환위기 해소와 國內投資資金調達을 모색케 하였고 1965년 6월의 韓日國交正常化와 배상금 및 차관획득으로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外資依存的 成長(growth-cum-indebtedness)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2~66년간에 총 3억 800만 달러(到着基準)이던 借款은 1967~71년에는 22억 6,200만 달러로 7.3배 이상 커지고 1972~81년간에는 185억 5,200만 달러로 늘어 1962~81년간에 총 211억 2,200만 달러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이 기간 중 無償援助는 12억 9,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外延的 發展戰略의 또 다른 표출은 農地擴張이었으니 1961년에 203만 2,600ha이던 농경지가 1968년에는 231만 88ha로 14.0%나 증가하였다. 이는 일부 황무지 내지 산지개발로 인한 것이며 다른 일부는 간척사업에 의한 것이었으니 1961년에 984만 2,800ha이던 국토면적이 1968년의 984만 7,700ha를 거쳐 (0.05%의 증가) 1981년에는 990만 1,600ha로 0.6% 증가한 데도 기인하는 것이었다.

(38) 1961년에 2억 7백만 달러로 그 해의 一般輸入對比 200.8%였던 외화보유고는 1963년 9월에는 1억 730백만 달러로 줄어 一般輸入對比 46.1% 수준으로, 다시 1965년 7월에는 1억 1,280만 달러로 당해연도 一般輸入對比 45.4%로 격감하였었다.

(3) 重商主義的 輸出戰略

공화당정부는 工業化를 통한 近代產業國家의 形成을 목표하였고 이를 위해 자본형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제1차 생산재산업이 거의 없었던 당시의 한국경제로서는 공업화를 위해서는 生產財輸入이 불가결하였고 따라서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對外支拂手段으로 전환할 수 있는 貯蓄, 그것도 소비재가 아닌 生產財輸入을 支辨할 수 있는 저축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원貨 貯蓄이나 소비재중심의 해외저축보다는 輸出이라는 形態의 貯蓄과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중심의 海外貯蓄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소비재형태의 무상원조나마 50년대 말의 美國國際收支危機로 줄어들어 國內에서 원貨 形態의 저축률까지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더하여 南北韓間의 첨예한 對立, 4·19와 5·16 등으로 표출된 정치적 不安定 그리고 1961년 현재 21억 달러에 불과한 GNP 크기로 알 수 있는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國際的 信認이 낮은 한국은 軍事政權의 적극적인 차관획득노력에도[39] 불구하고 충분한 규모의 생산재도입수단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유일한 脫出口로서 輸出드라이브가 시작되었다. 즉 정부는 1961년 9월 22일 「輸出奬勵補助金交付規則」을 제정공포하고 뒤이어 1962년에는 「通商振興法」을 제정하여 수출증대를 적극 도모하였는데 이 때 援用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1차산품中心의 수출상품구조를 工產品中心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62년까지도 27.0%에 불과했던 工產品輸出比重이 1963년에는 51.7%로 커지고 1979년 이후에는 90% 수준을 줄곧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세계무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의 輸入需要構造에 한국의 輸出供給構造를 접근시킨 것으로 그 후의 輸出伸張의 밑바탕이 되었다. 둘째로 輸出市場多邊化戰略이다. 1961년만 해도 한국의 交易對象國은 20여개 국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 일본, 홍콩의 비중이 87.0%에 달했었다. 그러나 1962년 이후 꾸준히 전개된 輸出多邊化戰略에 힘입어 교역대상국은 1980년까지는 1백 개 국가를 넘었고 미국, 일본, 홍콩의 비중도 48.4%로 낮출 수 있었다. 셋째로 輸出을 위한 機構를 整備하였다. 즉 1962년에는 貿易振興公社를 설립하고 1966년에는 輸出振興擴大會議를 상설케 되었고 1975년에는 綜合貿易商社制度를 창설하는 등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機構의 뒷받침을 강화하였다. 이같은 정상적 수출진흥전략에 추가하여 不法的인 戰略도 併行하였으니 네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각종 덤핑의 제도화였다. 즉 1964년 5월에 도입된 單一變動換率

(39) 1961년 8월 30일 경제기획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對日借款交涉團 파견 또는 같은 해 11월 2일 외국차관유치교섭을 위한 유럽·미국 2개 지구로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民間交涉團 파견 등의 노력이 곧 그것이다. 일본과의 교섭은 완전실패하고 西獨과는 3,750만 달러의 차관도입에 合意할 수 있었다. 韓國銀行(1968)을 참조.

制를 이용하여 1969년 경까지 격심한 換덤핑을 자행하였고 1962년 이래 세 차례에 걸친 輸出金利引下와 수출업체에 대한 減免稅 등 補助金덤핑의 폭도 강화하였고 1961년 9월 22일 「政府管理企業體職員報酬統制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公布를 계기로 賃金統制를 본격화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노동자의 實質賃金을 1962~66년 중 1961년 對比 평균 92.2%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소셜 덤핑을 조직화하였다. 다섯번째로 회사별, 협회별, 지역별, 해외공관별로 輸出目標量을 强制割當하여 목표액달성에 失敗한 데 대해서는 자금지원 또는 補助金支給 등을 中斷하고 목표액을 超過達成한 데 대해서는 각종 特惠를 추가하는 등 whip and carrot 정책을 강화하였다. 끝으로 1961년 8월의 「消費用 輸入抑制를 위한 臨時特別關稅法」을 제정하여 不要不急한 輸入을 엄격히 統制하고 또 1973년에는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정책을 강화하였다.

1962년 이후 강구된 무역정책은 수출에 있어서는 公正性 여하에 관계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총액을 증대시킨다는 것이었고 수입에 있어서는 가능한 최대한도의 자급자족을 실현시킨다는 重商主義的, 近隣窮乏化政策的인 내용의 것으로 일관되었다.

(4) 低賃金과 內需犧牲

자본가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발전요인으로서 자본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회세력균형을 반영하여 자연히 토지, 자본 등 소유계급이 지배하는 生產手段에 대한 報酬率이 勞動에 대한 報酬率보다 크게 마련이다. 더구나 이같은 자본·노동소득간의 隔差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커가게 마련이다. 시장세력을 규제하지 않고 방임만 하더라도 소득격차는 커지기 마련인데 공화당정부는 한편으로는 國內貯蓄과 기업가의 活動誘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輸出競爭力을 창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低賃金政策을 썼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勞動組合을 彈壓하고 노동세력을 약화시켜 名目賃金의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다분히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성하여[40] 실질임금을 下落시켰다. 그 결과 1961년 가격을 기준할 때 1961년에 2,306원이던 製造業勞動者의 賃金은 1964년에 1,929원으로까지 하락하였었으며 1962~66년간의 실질임금은 2,127원으로 1961년 수준에 비하여 92.2%로 억눌려 있었다. 1962~66년 중 도매물가는 연평균 16.7%나 올라 같은 기간 중의 제조업 名目賃金上昇率 15.9%를 앞질렀던 것이다. 이같은 임금·물가정책의 결과 한계저축성향이 낮은 勞動者階級에게 불리한 逆進的 再分配로 인하여 증대된 자본가계급

(40) A. Robinson에 따를 때 E. Lindahl은 인플레이션이 "It was not a mere academic issue. It was a piece of ***wilful administrative carelessness*** which was doing infinite damage to the opportunities of the world to make ordered progress"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Hague(1962, p. xii)].

의 자발적 저축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勞動者階級中心의 强制貯蓄의 증대가 합쳐져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저축률이 높아짐으로써 資本形成이 促進되어 수출산업을 중심한 공업건설이 시작될 수 있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實質賃金의 장기간에 걸친 大幅引下는 임금비용을 크게 절감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1인당 GNP 87달러라는 過小供給經濟 하에서 노동자계급에게 强制된 消費節約分(=강제저축)은 그대로 輸出剩餘로서 이용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커지면서 정부는 1965년부터 한편으로는 소위 逆마진制를[41] 도입함으로써 自發的 貯蓄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韓日國交正常化가 가능케 해준 外資導入을 적극화함으로써 국내인플레이션도 막고 (〈表 2〉) 동시에

〈表 2〉 貯 蓄 動 向

	國民貯蓄率	(그 중 民間貯蓄率) A	海外貯蓄率 B	(A/B)×100
1964	8.7	8.3	6.9	120.3
1965	7.4	5.7	9.4	89.1
1966	11.8	9.1	8.5	107.1
1967	11.4	7.3	8.8	83.0
1968	15.1	9.0	11.2	80.4

資料：韓國銀行 (1984).

공업화를 위한 投資資金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켰다. 일반적으로 국내투자수요가 國內貯蓄供給을 超過할 때 그것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인플레이션의 壁」과 「國際收支赤字의 天障」이란 형태의 저해요인을 낳는다. 外資를 이용할 수 없어 인플레이션에 脫出口를 찾았던 공화당정부는 1965년에 인플레이션의 벽이 돌파할 수 없을 만큼 두터워지자 韓日協定締結을 서둘러 國際收支赤字의 천장을 높임으로써 1965~85년의 한국경제를 특징지은 外資依存的 成長戰略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戰略變化의 근본요인으로 勞動市場의 性格變化와 임금동향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화의 진전으로 경제활동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42] 제 1 차 5개년계획의 종료(1966년)를 前後하여 技能人力不足이 심각해지고 技能人力賃金의 급격하고도 대폭적인 上昇은 임금수준 일반을 상승시켰고 그 결과 정부의 反勞動的, 직접적인 賃金抑制政策도 일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어 1967

(41) 1965년 9월 30일의 金利改正으로 受信利子率은 定期預金基準 月 2.5%(=年 30%)로, 與信利子率은 상업어음할인을 기준으로 年 24%로 개정되었다. 이같이 볼 때 逆金利를 통한 저축증대→인플레이션 억제효과는 借款輸入增大→實物·貨幣 양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억제효과에 비하여 컸다고 볼 수 없다.

(42) 1961년에 대비할 때 1966년의 제조업은 1975년 불변가격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2.0배 커졌고 제조업 취업인구로 1963년 대비 1966년 현재 36.6% 증가하였다.

~72년에는 단기간이나마 노동의 相對的 분배분의 增加가 있었다.[43] 그런데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역사로 보나 경제이론으로 보나 공업발전의 초기에는 당연히 工業部門을 中心한 投資에 의하여 경제발전이 촉발된다. 그 다음 산업혁명 당시의 섬유 및 석탄산업, 진정한 산업혁명 당시의 철강 및 철도산업, 20세기 초의 제3차 산업혁명 당시의 자동차, 전기기기, 화학산업 등의 歷史的 例에서 실증되듯 主導產業中心의 투자활동이 완료되면 투자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담당하지 못하고 투자기간 중 살포된 賃金 등을 中心으로 內需가 경제발전을 지탱하게 된다. 그리고 國內市場이 飽和(saturation)되어 內需가 더 이상 景氣와 발전을 擔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수출이 경제발전을 담당하는 最終要因으로 등장한다.

한국경제의 경우도 1960년대 중엽까지의 輸入代替產業 建設과 1970년대 中盤까지의 重化學工業 建設이 일단 그 나름의 완료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국내수요가 경기를 지탱하고 발전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和黨정부의 重商主義的 性格은 임금상승을 최대한으로 저지하고[44] 輸出增大를 위하여 國內消費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抑制되어야 하며 오직 수출에 의해서만 근대화와 경제자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內需基盤의 의도적 弱化는 Linder(1961)의 이론을 빌릴 것도 없이 對內的으로는 規模의 經濟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對外的으로는 덤핑 등 不公正貿易慣行이라는 지탄과 보복을 초래하여 1974년 이후의 수출신장률은 그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 현저히 하락되지 않을 수 없었다.[45]

(5) 全面的 工業化

이 기간을 특징짓는 또 다른 한국자본주의 發展戰略은 全面的 工業化였다. 국제분업의 본격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지구가 수많은 국민국가로 분열되어 있고 각 國民經濟마다 人的, 知的 資源의 부존이 고르지 못하고 嗜好에는 상당한 정도의 同質性이 있을 때 特化와 貿易은 경제체제와는 관계없이 要求된다. 더욱이 한국경제와 같이 국토면적이 99,000km²에 불과한 나라는 資源賦存의 偏倚가 더욱 커서 전면적 工業化를 지탱해 줄 만큼, 즉 모든 공업에 比較優位를 실현시켜 줄 만큼 큰 利點을 갖는 原資

(43) 工業化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1960년의 37.4%에서 1965년의 31.8%로 하락하였던 분배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율은 1971년에는 다시 41.3%로 커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72년 10월 17일의 緊急措置 이후 勞動彈壓이 강화되면서 그 비율은 1974년의 37.9%, 1975년의 39.4%, 1976년의 41.2%로 변하였다. 제조업노동자의 수는 1964년의 63만 7천 명, 취업자 중 8.2%에서 1971년의 133만 6천 명, 13.3%를 거쳐 1976년에는 267만 8천 명, 21.3%로 커졌다.

(44) 1962~81년간에는 「낮은 실질임금은 國益에 기여한다」(Low real wages are to the national interest)는 重商主義 賃金學說이 일관되었다.

(45) 1962~73년간에 연평균 45.0%이던 수출신장률은 1974~81년간에는 26.8%로 크게 下落하였다. 달러價値의 하락을 감안할 때 실질신장률은 38.7%에서 16.6%로 둔화되었다.

材, 投入財 및 노동력의 공급이 어렵다. 그러기에 小規模 經濟國의 平均輸入性向은 대규모 경제국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크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규모 경제국에서는 전면적 공업화가 절대불가능하다는 客體的 制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는 5개년계획의 기본틀과도 관계없이 全面的 工業化戰略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5·16 이전의 한국공업은 미국원조에 의하여 건설된 자연섬유공업, 合板 등 목재공업, 설탕, 밀가루 등 식료품공업을 비롯한 몇 가지 消費財工業과 UNKRA 원조에 크게 힘입은 시멘트, 板유리, 비료 등 소수의 投入財工業이 있었을 뿐이며 소비재공업 중 면직물 및 합판은 過剩生産恐慌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7년 경에 겨우 輸出産業으로 轉換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었고 1962년 현재 제조업의 부가가치구성비는 GDP 기준으로 21.4%, 輕工業의 비중은 생산액을 기준하여 26.8%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다.

공화당정부의 工業化 試圖는 60년대 초의 前述한 바 있는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精油, 化學肥料, 시멘트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中間財産業, 화학섬유, 電氣機器 특히 家電機器 등 消費財産業 등, 모두 輸入代替的 성격이 강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 중의 주요 프로젝트로 輸入代替的 性格이 희박했던 것을 許示生産的인 소형승용차공업뿐이었다. 자동차공업 5개년계획이 수립된 1962년(4월)의 우리나라 1인당 GNP는 87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기존의 消費財工業과 제1차 5개년계획기간 중 건설된 輸入代替産業 中心의 성장을 해오던 한국공업은 1972년의 蔚山석유화학공업단지의 건설 및 1973년 浦項종합제철공장의 제1기 設備竣工과 더불어 본격적인 重化學工業化와 全面的 工業化戰略을 전개하게 된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와 1979년의 麗川석유화학공업단지의 完工으로 에틸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46] 이를 土台로 化工藥品工業, 합성수지공업, 합성섬유공업, 합성고무공업 등 한 set의 石油化學工業이 건설되었다.

한편 1981년까지 생산량을 1,024만 4천 톤으로 늘려 自給率 113.4%를 실현한 철강공업을 기초로 하여 造船, 자동차 등 輸送機器工業, 공작기계, 농기계, 산업기계 등 일반기계공업 등 鐵鋼前方聯關産業 또한 정비되어 量的으로 급성장하였다.[47] 특히 勞動力의 無制限供給條件이 소멸되기 시작한 1974년 경 이후부터는 半導體, 컴퓨터,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 등 尖端技術分野에서도 공업건설이 가속화되었다.

---

(46) 1973년에 생산액 506.9억 원으로 제조업전체에 대하여 1.4%, 화학공업에서의 비중 19.4%이던 석유화학공업은 1980년에는 생산액 1조 5,029.1억 원, 각각에 대한 비중은 4.1%와 40.8%로 커졌다.

(47) 기계공업의 비중은 1962년의 8.7%에서 1981년의 14.8%로 커졌다.

그러나 자본, 기술, 기술인력상의 制約이 컸던 당시의 한국경제로서는 이같은 全面的 工業化는 附加價値生産性이 지극히 낮은 최종조립과정의 건설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1960년대의 공업화는 종래의 完製品輸入을 중간재 및 자본재수입으로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1970년대 이후의 그것은 일부 중간재수입을 原料輸入으로, 또 일부 기계수입을 部品 및 技術輸入으로 代替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현대경제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자본 역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그 重要性이 결코 저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낙후되고 자본축적 역시 충분하지 않은[48] 小規模 經濟國 한국으로서는 動態的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소수의 산업을 중심으로 前後方聯關産業을 自己完了的인 한 set로 중점육성하는 發展戰略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자연적, 기술적 制約에 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전면적 공업화로 한국경제는 기술 및 자본재의 構造的 輸入依存이라는 從屬體制를 탄생시켜 國際收支 基調까지도 위태롭게 하였던 것이다.

(6) 農村의 植民地化

1950년대에도 安定政策이란 구실 아래 低穀價政策을 써왔고 특히 1956년 이후에는 PL 480원조에 대한 미국잉여농산물을 배경으로 강력한 農産物價格抑制政策을 써왔지만 농촌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수탈정책은 없었기에 1955~61년중 農家交易條件은 오히려 7.3% 가량 개선되었다.[49] 그러나 重農主義를 크게 내세운 공화당정부하에서는 농촌은 都市의 植民地로서 조직적으로 收奪되기 시작하였다.

1962~81년에 있어 농촌과 농업은 産出과 投入 兩面에서의 犧牲이 강요되었다.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에 의하여 엄격히 제약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농산물가격은 需要側 요인에 의하여, 공산품가격은 供給側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결과 短期的으로 생산성상승의 이익은 농산물의 경우는 低價格 形態로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공산품의 경우는 高利潤이란 형태로 생산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Kalecki에 의해 명확히 定立된 명제이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重農政策이라면 당연히 農産物價格支持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농가소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소득증대에 유인된 農業生産增大를 유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價格支持는 전혀 排除한 채 농경지 증대, 農業投入의 추가를 통한 生産增大에만 주력하였다. 그런데 농업투입의 경우 農家勞動投下時間의 증대 또는 농가의 自家生産

(48) 1981년 현재 한국의 국민저축률은 21.7%로 같은 해 미국의 18.0%보다 크나 저축총액은 145.8억 달러로 미국의 총저축 5,494.7억 달러의 37.7분의 1에 불과하였다. 한편 같은 해 일본의 국민저축률은 31.9%, 저축절대액은 3,714.7억 달러로 우리나라 GNP의 5.5배였다.

(49) 1960년을 기준한 穀物都賣價格指數는 1955년의 63.2에서 1961년의 123.9로 96.0% 상승한 반면 곡물 이외 全商品의 그것은 60.9에서 111.3으로 82.8% 올랐다.

〈表 3〉 化學肥料·農藥使用量, 農家投下勞動時間

	肥料使用量		農藥使用量				農家投下勞動時間	
	1961	1981	1961	1968~73	1973	1981	1961	1981
總量 (千t, 千시간)	308	832	5.6	25.3	13.8	34.1	2,399.3	1,924.8
(指數)	100.0	269.1	100.0	335.3	100.0	247.1	100.0	80.2
ha當使用量 (kg, 시간)	151.7	380.1	2.7	11.1	6.2	15.6	2,746.2	1,785.8
(指數)	100.0	250.7	100.0	407.3	100.0	251.6	100.0	65.0

註 · 1968~73년 농약사용량은 年平均値.

投入財 예컨대 綠肥 등의 추가투입은 비록 농가희생의 반대급부이기는 하지만 農家所得增大를 수반하는 농업생산 증대를 가져온다. 그러나 價格誘因이 작용하지 않는 條件下에서의 生產增大政策은 화학비료, 농약 등 도시의 공업생산물의 추가투입 즉 도시소득의 증대와 綠肥, 農業勞動의 減小 등 농가소득의 하락을 隨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表 3〉). 뿐만 아니라 1964년 경부터 시멘트의 生產過剩이 일어나자 농촌부업 개조, 農路改良, 농촌지붕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都市工業의 過剩生產分을 농촌에 강제 판매하였는데 농촌지붕 개량, 농가취락구조 개선 등은 1972년 이전에 있어 農家負債增加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鋼項製鐵의 가동에 따른 鐵鋼材 공급증대는 비교적 소박한 기술로써 가능한 農業用機械生產의 길을 열었고 이에 따라 1973년을 경계로 농업생산을 위해서 종래의 동력경운기, 인력분무기, 인력탈곡기에 추가하여 동력이앙기, 동력분무기, 動力刈取機 및 바인더, 동력탈곡기 등 道具的인 것인 아닌 本格的인 農業用機械가 판매되기 시작하였다.[50] 이같은 값비싸고 省力的인 農機械의 대량판매는 한편으로는 都市工業部門의 所得을 增大시키는 반면 농가지출 증대와 그로 인한 농가부채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고[51] 또 한편으로는 기계에 의

(50) 1973년에 처음 보급된 동력이앙기는 1973년의 6대에서 1981년의 15,271대로, 역시 1973년부터 판매된 동력살무기 및 동력분무기는 그 해의 97,306대에서 1981년의 364,688대로, 1973년에 51대이던 동력예취기 및 바인더는 1981년에는 17,674대로, 동력탈곡기도 1973년의 85,161대에서 1981년의 238,633대로, 콤바인도 1973년의 25대에서 1981년의 2,130대로, 건조기도 1973년의 730대에서 1981년의 2,143대로, 動力除草機는 44대에서 713대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반면 인력탈곡기는 같은 기간중 557,945대에서 199,498대로, 人力吹藏機는 321,627대에서 85,102대로, 足踏製繩機는 1978년의 145,432대에서 1981년의 116,614대로 人力살·분무기도 1977년의 903,837대를 피크로 1981년에는 820,523대로 감소하였다.

(51) 農家負債는 1962년의 호당 11,294원에서 1973년의 13,766원으로, 다시 1981년에는 437,143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生產性負債比率은 1965년의 36.4%에서 1973년의 57.1%로 커졌다. 그 간의 物價上昇을 감안하면(전국도매물가지수 기준) 농가부채는 1962년의 100에서 1973년의 35.4로 줄어들다가 1981년의 226.3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1988년의 농가부채는 313만 1천 원에 이르고 있다).

한 농업노동의 代替, 離農, 農村人口過疎, 農村人口年齡構造의 高齡化 등 농업생산력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사회적(技術外的) 諸要因을 만들고 그 반면 도시공업에 대하여서는 1974년부터 顯在化하기 시작한 勞動力無制限供給條件 消滅에 따른 임금상승 압박을 크게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52]

결국 이 기간을 통하여 1차산업부문은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였고 總穀類生産은 1961년의 552만 1천 톤에서 1981년의 692만 6천 톤으로 25.4%, 쌀生産은 346만 3천 톤에서 506만 3천 톤으로 46.2% 증대시켜 主穀自給이란 오래된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지출을 기준한 농가의 1인당 생활수준은 都市民의 그것을 100으로 할 때 1967년의 46.7% 수준에서 1971년의 53.8% 수준을 거쳐 1981년에는 91.2%로 커졌지만 여전히 都市民 水準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3) 成長·安定과 命令·市場의 葛藤(1982~90年)

逆進的 再分配를[53] 수반하는 성장제일주의정책은 農·工間, 內需·輸出間, 大企業·中小企業間(〈表 4〉), 재벌과 민중간,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격화시켰고 이러한 갈등은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조건이 소멸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調整機制의 기능면에서 보더라도 經濟規模의 擴大 및 복잡화와[54] 토지·노동 등 外延的 成長要因 供給의 비탄력화는 命令에 의한 조정의 효율성을 계속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취해질 合理的인 政策代案은 再分配를 强調하는 성장전략과 명령의 축소, 市場機制의 活性化 뿐이었고 이러한 요구는 1960년대 말부터 均衡化政策이란 표현으로 강력히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해진 정책은 명령을 강화하고 또 多

〈表 4〉 製造業部門의 大企業比重變化 (單位 : %)

	事業體數	從業員數[1]	生産額	附加價値
1963	1.3	33.6	41.5	47.2
1973	4.5	60.6	73.8	72.8
1981	3.1	48.9	67.7	65.2

註 . 1) 1963년은 200人 이상, 1973, 81년은 300人 이상의 기업.

(52) 1차산업취업자의 절대수는 1976년의 560만 1천 명을 피크로 1981년의 480만 6천 명으로 14.2% 감소하고 취업자비율은 1973년의 50.0%에서 1981년의 34.2%로 격감하였다. 全體家口 중 농가의 비율은 1971년의 42.4%에서 1981년의 27.0%로 크게 줄어들었다.

(53) 1961년에 分配國民所得의 85.2%를 차지했던 勞動所得(=피용자보수+비법인기업소득)은 1981년에는 72.9%로 12.3%포인트 작아졌다.

(54) GNP는 1972년에 1백억 달러, 1인당 GNP는 1974년에 5백 달러, 수출은 1977년에 1백억 달러를 넘어섰고 1973년에는 2차산업의 비중이 1차산업의 그것보다 커졌으며 생산액을 기준한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1977년에는 경공업을 앞서게 되었다.

〈表 5〉 主要經濟指標　　(單位：%, 백만 달러)

	1962~81	1962~73	1974~81
經濟成長率	8.42	9.07	7.43
輸出伸張率	29.87	38.73	16.52
物價上昇率	16.24	11.93	22.71
貿易赤字[1]	1,638.5	762.8	2,952.0
外債[1]	1,172.1	473.5	2.220.0

註：1) 年平均値.

岐化하며 特惠를 크게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暴力的 對應은 1971년의 司法波動과[55] 1972년의 8.3緊急金融措置,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의 緊急措置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實體와 調整機制, 成長과 分配間의 모순이 격화되어 1974년을 경계로 성장률, 수출신장률은 급격히 저하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는 확대되는(〈表 5〉) 비효율이 누적되던 끝에 공화당정권은 붕괴되고 逆進的 再分配를 수반하는 官主導의 成長第一主義戰略은 1981년에는 적어도 名目的으로는 포기되기에 이르렀다.

1982년에 성립된 民主正義黨정부는 경제문제와 관련, 한편으로는 國民經濟運用에 있어 官主導型 計劃的 開發過程에서 굳어진 官僚專制主義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국민적 거부, 달리 표현할 때 정치권력의 절대화와 경제의 예속에 대한 거부와 그 代案으로서의 政經癒着의 斷絕과 經濟的 決定權의 分散 및 경제운용의 民間主導 등 經濟民主化 要求,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에 심화된 不均衡에 대한 국민적 拒否와 그 代案으로서의 社會正義實現 요구를 최소한도 名目的으로나마 주요 國政指標로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국정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直接統制의 緩和·縮小, 민간부문의 역할확대와 民·官協調하의 경제운용, 市場機能의 活性化, 金融自律化, 기업의 自律性 보장과 창의성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수정된 開發戰略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으로 福祉社會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 아래 物價安定과 이를 통한 국민생활안정, 교통·통신과 상하수도 등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주택건설 등 안정정책, 의료보험, 국민복지연금, 노령, 폐질자에 대한 福祉擴大 등 사회보장정책,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을 위시한 環境保全, 공해방지 등, 종래의 중상주의적 간섭주의에 대신하여 福祉國家的 干涉主義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正義社會俱現이라는 국정지표와 관련하여서는 公

(55) 1971년 司法波動의 근본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고 그같은 暴力的 對應은 행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경제개발이란 名分 아래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일을 허용한 維新憲法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正去來制度의 정착, 지역간 불균형 해소,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과의 系列化, 농어민소득 증대, 最低賃金의 法制化 등이 추진되었고 끝으로 경제적 효율과 관련하여 貿易開放과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高度化, 농업기반 整備와 영농기계화, 기술인력 養成과 기술집약산업 育成,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開發 및 산업으로의 導入·利用과 생산성 향상 등이 주요한 개발전략으로 구상되었다.

민주, 복지, 사회정의, 효율이라는 1982년 이후의 開發戰略 중 첫째, 민주화전략의 경우 外樣으로는 金融界人事權의 자율화 등 分權化 조처가 있었고 또 金利自由化, 換管理 철폐 등 市場機能 活性化 조처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의한 集權的 決定패턴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니 시장경쟁이 아니라 行政管理를 통한 不實企業整理나 國際商事그룹의 空中分解는 이를 증명한다. 1982년 이후의 命令經濟는 1962~81년과는 달리 可視的, 公式的인 개입·조정 대신 「알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직접 개입하여 조정한다」는 遠隔統制機制로 대체하였을 뿐이다.[56]

그러나 福祉와 分配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마찰, 그리고 특히 勞動組合의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된 노동자세력의 無力化 및 노동조합의 御用化 등 가혹한 노동탄압의 계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改善이 있었다. 첫째, 混合體制國家의 4대 기능 중 〔Friedman(1971)〕 規制者機能과 企業家機能은 이 기간 중에 현저히 축소되고 配慮者機能(state as provider)과 審判機能은 현저히 커졌다. 이는 1982년 이후의 한국자본주의 開發戰略이 1962~81년간의 規制的 成長에서 福祉的 正義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증한다. 「國家가 모든 국민에게 最低生活을 保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며 경제력의 자유로운 행사가 파생시키는 폐해를 緩和」시키는 정부노력의 표현인 배려자기능의 비중은 1972년의 18.8%에서 1989년에는 32.5%로 커지고 「갖가지 규제·간섭을 통하여 경제생활 일반을 관리하고 産業開發投資나 輸出入規模 및 종류를 규제」하는 規制者機能을 위한 지출비중은 29.5%에서 20.9%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1974년에 規制的 成長을 위한 국가지출 비중이 74.3%에서 61.4%로 줄어든 것이다(〈表 6〉).

둘째로 1979년의 정책판단착오로 실시된 緊縮政策은 1980년의 冷害로 인한 凶作과 상승작용을 하여 1979~81년에 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으나 이를 계기로 1962~81년

(56) 이는 마치 1770년대~1860년대간에 歐美帝國主義勢力이 무역을 통한 지배가 가능할 때는 非公式帝國 (informal empire)로 방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公式帝國(formal empire)으로 합병·지배하였던 소위 自由貿易 帝國主義(free trade imperialism) 전략과 흡사하다 〔Gallagher and Robinson (1953)〕.

〈表 6〉 政府支出의 機能別 構成比率[1)]　　(單位 : %)

	1972		1980		1989	
規制者機能	29.5	74.2	14.8	64.7	20.9	61.4
企業家機能	44.7		49.9		40.5	
配慮者機能	18.8	25.8	28.4	35.3	32.5	38.6
審判機能	7.0		6.9		6.1	

註 : 1) 政府支出 중 硬直性支出인 국방비와 교육비, 그리고 분류불가능한 지출인 기타 등을 제외한 부분을 Friedman의 4대 기능별로 구분한 것임.

간의 物價構造歪曲이 어느 정도 바로 잡히고 정부의 安定化政策은 소위 3低現象의 도움을 얻어 1982~89년간에 물가상승을 한 자리 수에 묶고 그러면서도 成長率은 거의 두 자리수에 접근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분배국민소득 중 勞動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은 1984년에는 74.5%로 개선되었고 所得集中度도 1980년의 0.3891에서 1985년의 0.3631로 다소 완화되었다.

3. 맺 음 말

前近代에서 近代로의 전환은 단순한 移行이 아니라 목숨을 건 비약 (*salto mortale*)이다.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876년 이후의 한국 근대화노력, 자본주의적 발전노력은, 舊帝國主義나 自由貿易 帝國主義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혹하게 전개된 新帝國主義 앞에 다소의 制度導入, 경제력기반 강화노력을 시도한 채 좌절되고 1905년부터 조직적으로 강제된 일본의 제국주의 수탈정책 아래 자주적으로 發展戰略을 구상하고 실천할 근거를 상실하였다.

日本은 近世初 유럽제국의 南北美洲 植民地에 대한 중상주의적 제국주의정책을 모두 채택하여 보다 가혹한 형태로 실시하였다. 英國이 北美 13州 식민지에 적용했던 會社令의 시행 또는 스페인領 미국에서 輸出用 一次產品을 중심한 강제노동을 본딴 산미증식정책, 남면북양정책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905~45년까지 한국경제는 後發資本主義國家인 일본의 離陸(take-off)을 위한 補助裝置로서 일본경제에 편입, 예속되는 과정에서 物質的 生產의 증대란 外樣에도 불구하고 自主的 成長을 위한 기반을 상실하고 동시에 신업간·지역간의 跛行性과 對外依存性을 심화시켰다.

分斷을 수반하지 않은 해방이라면 이러한 畸形에서 그런대로 빨리 탈피할 수 있는 主體的, 經濟的 條件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은 北의 지하자원, 전력, 重化學工業과 南의 농업, 輕工業을 단절시켜 南과 北 모두에게 격심한 경제적 곤경과 또 다른 對外依存의 深化가 강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 모두 이러한 곤경은 美·蘇의 경제원조에 의

해 탈출했으나 救恤的 性格의 원조가 일단 종료된 다음 北은 外資에 의존하지 않는 自力更生이라는 소규모 경제국으로서는 지극히 효율성이 낮은 발전전략을 택함으로써 저성장과 빈곤을 결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南은 美國의 世界戰略이라는 큰 桎梏 속에 묶여 1961년까지는 소비재공업을 중심한 발전전략이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원조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명히 할 점은 미국원조가 갖는 동일한 商品構成에도 불구하고 유럽제국과 일본이 자주와 발전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음에 반하여 한국이 依存構造의 강화와 산업간 不均衡擴大를 겪게 된 것은 한국만이 1차산품 생산국가였고 다른 나라는 공업국가였다는 차이도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1962년 이후 展開된 發展戰略은 첫째, 집권세력인 군인들에게 특유한 강력한 성취동기와 코스트개념의 결여, 전면적 공업화와 가능한 최대한도의 자급자족이란 重商主義 이데올로기,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서의 자본중시와 勞動彈壓과 農民犧牲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비효율이 체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동질성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엄격히 분석할 때 196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軍人政權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발전략은 Myrdal(1968, Ch. 2)이나 Tinbergen(1963, Chs. 5-6) 등이 말하는 새 시대를 擔持할 새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Colbert에서 시작하여 Bismarck의 絕對主義的 獨逸國民國家 형성 이데올로기로 변형된 후 다시 일본으로 도입되어 明治維新을 통하여 그 역시 절대주의적 일본제국 형성의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였던 중상주의에 뿌리내린 反動的인 것이다.[57]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개발전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對外經濟政策의 近隣窮乏化政策的 性格, 개방에 대한 저항, 決定權의 集中과 보편화된 干涉主義 등이 그 현저한 사례이다.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前近代的인 開發戰略은 중상주의에 대한 최후의 대표적 신봉자인 朴正熙 死後 10년에도 아직 그 殘滓가 남아 있다. 세계경제의 큰 틀과 조화될 수 있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전략은 重商主義的 偏見을 청산하였을 때 제대로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韓國銀行, 『國內主要經濟日誌集, 1957~1967』, 1968.

(57) 공화당정부가 표방한 富國强兵이란 곧 Viner에 의하여 중상주의 목표로 기술된 power and plenty이며 소위 10月維新의 상상적 근원은 明治維新에 있음은 朴正熙의 모든 言行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_____, 『國民所得計定』, 1984.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7年版』, 1947.

_____,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1948.

金秀行, 『政治經濟學原論』, 한길사, 1988.

金潤煥・金洛中, 『韓國勞動運動史』, 一潮閣, 1975.

金正浩, 『會計原理』, 經文社, 1980.

金俊輔, 『韓國資本主義史研究 (Ⅱ)』, 1974.

朴在潤, 『貨幣金融原論』, 博英社, 1979.

朴正熙, 『우리民族의 나갈 길』, 1962.

愼鏞廈,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韓國研究院, 1979.

劉京春, 『土地利用의 公法的 規制』, 江原大學校出版部, 1990.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1973.

_____, 『韓國經濟史(改正版)』, 日新社, 1979.

청와대비서실,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1975.

崔應祥 編, 『農政十年史』, 世文社, 1959.

洪性囿, 『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 高大出版部, 1965.

全國經濟調査機構聯合會朝鮮支部 編, 『朝鮮經濟年報 昭和十四年版』, 1939.

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史』, 1943.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度.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報告書』, 1918.

旗田 巍, 『朝鮮史』, 東京 : 岩波書店, 1951.

梶村秀樹,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 龍溪書舍, 1977.

柴垣和夫, 『三井三菱の百年』, 岩波書店, 1968.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1942.

『文藝春秋』, 1987. 4.

Adelman, I.(ed.), *Practical Approaches to Development Planning: Korea's Second Five-Year Pla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9.

Baran, P., *Political Economy of Growth*(2nd ed.), New Delhi: People's Publishing House, 1962.

Galbraith, J.K., *The New Industrial State*(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8.

Gallagher, F., and Robinson, R., "Imperialism of Free Trade," *Economic History Review*, 1953.

Hague, D.C., *Inflation*, London: Macmillan, 1962.

Hicks, J.R., *A Theory of Economic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1969.

Hoffman,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Friedman, W., *The State and the Rule of Law in a Mixed Economy*, London: Stevens and Sons, 1971.

Linder, S.B.,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1961.

Myrdal, G., *Asian Drama*, 3 vols., Hammondsworth, Middleness, England: Penguin Books, 1968.

Neale, W.C., "The Market in Theory and History," in K. Polany, C.M. Arensberg, and H.W. Pearson (ed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 New York: The Free Press, 1957.

Robbins, L.,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London: Macmillan, 1968.

Ryndina, M.N. *et al.*, *Fundamentals of Political Econom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0.

Samuelson, P.A.,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9th ed.,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73.

Slichter, S., "Are We Becoming 'Laboristic' State?" New York Times Magagine, May 16, 1948.

_____,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Its History, Problems and Prospects*, Baton Rouge: Lousiana State Univ. Press, 1961.

Sombart, W., *Der moderne Kapitalismus*, erster Band, München und Leipzig: Verlag von Dunker und Humboldt, 1919.

Tinbergen, J., *Lessons from the Past*, Amsterdam Elsevier, 1963.

Weber, M., *Wirtschaftsgeschichte*, Munchen und Leipzig: Verlag von Duncker und Humboldt, 1924.